

# 雪松 鄭光鉉 선생의 생애와 학문의 여정\*

鄭肯植\*\*

## 목 차

- I. 머리말
- II. 삶의 역정과 학문
  - 1. 식민지기의 삶과 학문
  - 2. 해방과 삶, 그리고 학문
- III. 논저의 소개
- IV. 학문의 자세
- V. 맺음말
- 부록



雪松 鄭光鉉 선생 近影(1902~1980)\*\*\*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6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2015년 한국민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한국 민법학 초기의 회고와 평가”(12.21)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며, 익명의 심사위원들의 도움에 감사한다. 다만 오류 등은 필자의 책임이다.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 설송 선생의 근영은 『서울대학교 법학』 4-1·2(1962)에 수록된 것이며, 선생이 사용하신 책상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역사관에 소장되어 있다.

## [국문 요약]

설송 정광현 선생(1902~1980)은 1930~38년 연희전문학교에서 법학을 교육하였다. 195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하여 본격적인 연구를 하였으며, 평생 저서 10권, 논문 136편, 합계 146편을 발표하였다. 그는 학문적으로 엄정하였으며, 제자들을 교육할 때에도 그러하였다. 그는 한국에서 친족상속법의 기초를 구축하였으며, 그의 연구성과는 서거 후 30년 지난 현재에도 의미가 있으며, 그의 역저 『한국가족법연구』는 이미 고전이 되었다. 그는 민법 중에서도 오로지 친족상속법만 연구를 하였으며, 그 목적은 가족법의 민주화, 나아가 사회의 민주화로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입법에서 구현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학술활동은 물론 대중계몽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195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창립으로 결실을 맺었다.

[주제어] 정광현, 친족상속법, 민법전 편찬, 여성의 법적 지위, 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족법연구』

## I. 머리말

필자가 雪松 鄭光鉉 선생(1902. 음5. 3.[양 6. 8.]~1980. 12. 7)을 처음 알게 된 때는 1986년 대학원 석사과정 때 은사이신 瀛山 朴秉濠 선생께서 한국법제사를 전공하게 된 계기를 설명한 글<sup>1)</sup>과 연구실과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서가에 걸려 있는 사진 그리고 최종고 선생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은사이신 瀛山 朴秉濠 선생의 스승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또 영산 선생과의 대화로 학문적 엄격함과 약간의 인간적인 풍취도 귀동냥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격적이지는 않지만 주로 식민지기 법제사와 상속법 관련 연구를 하면서 설송 선생의 역저 『韓國家族法研究』를 경전처럼 활용하였다. 그러나 공부하는 분야가 직접적으로는 연결되지 않고 또 생전에 직접 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학문적 훈도는 간접적으로 받았다. 그렇지만 설송 선생은 필자의 학문적

1) “... 1년 반쯤 지나서 학위논문 준비를 하던 어느 날 《經國大典》(禮典)을 잠깐 보고 있는데 田鳳德 선생이 古法典을 해독할 수 있느냐고 하시기에 읽을 수 있다고 했더니 그러면 미개척분야인 한국법제사를 전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기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10여 일 후에 정광현 선생으로부터 한국법제사로 전공을 바꾸라는 엄명을 받았는데, 필경 진 선생께서 어떤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었다. 논문 제출기한을 6개월 앞둔 청천벽력 같은 엄명을 거역할 수 없어 다시 1년을 더 연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 한국법제사를 전공하게 된 첫 번째의 계기였다. ...”(『韓國法制史攷』[법문사, 1974], 서문).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으며, 필자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준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근대법학교육은 1895년 법관양성소의 설립에서 출발하였고, 법학연구도 비록 일본에 의지하였지만 존재하였다.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법학은 해방과 정부수립 후부터 성립되었으며, 당시 격변의 시기에 법학교육과 연구를 수행한 제1세대 학자들의 노고 덕분에 현재 법학이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한국현대사와 함께 법과 법학도 발전하였으며, 변화의 와중에서 한국법학의 역사를 되새기는 것은 세계화시대에 우리 법학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로 한국 친족상속법과 관련하여 개척자이신 설송 정광현 선생의 학문세계를 소개하여 가족법학의 형성과정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설송 선생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되었다. 한국법학교수회에서는 1995년 “한국 법학교육 100년”의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韓國身分法の 開拓者였고 身分法の 改正을 위하여 獻身하신 鄭光鉉 교수 추모특집으로 하여 다음 논문을 수록하였다.

金疇洙, 鄭光鉉 博士의 婚姻法/ 崔炳煜, 鄭光鉉 博士의 婚姻申告性質論/ 裴慶淑, 韓國相續法과 鄭光鉉 博士의 見解와 學說/ 黃迪仁, 鄭光鉉 教授와 著作權法/ 朴秉濠, [生涯와 業績] 鄭光鉉 先生의 學問世界<sup>2)</sup>/ 李兌榮, [回顧] 설송 정광현 선생님/ 都志薰, [紹介] 鄭光鉉 『韓國家族法研究』/ 朴鈞旻, [紹介] 鄭光鉉 『三·一 獨立運動史』<sup>3)</sup>

위의 글들에서 설송 선생의 학문 전반이 자세히 소개되었고, 최종고는 법학자 31분에 포함하여 설송 선생<sup>4)</sup>을 다루었으며, 임상혁은 『姓氏論考』를 분석하여 학문적 입론을 검토하여, 민족전통에 대한 역사의식, 항일사상, 학자

2) 이 글은 『가족법논집』(진원, 1996)에 수록되었으며, 앞으로 이 책에서 인용한다.

3) 한국법학교수회 편, 『법학교육과 법학연구: 고 정광현 박사 추모 논문집』(길안사, 1995).

4) 최종고, 『한국의 법학자』(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107-140쪽[초판 1989].

적 소명에 터잡아 이성과 합리성을 존중하였다고 평가하였다.<sup>5)</sup> 필자는 선학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저서의 서문을 소개하여 저자의 소리를 직접 드러내고 저서들에 대한 평들을 소개하여 학문적 업적을 드러내려고 한다. 먼저 삶의 역정을 몇 단계로 나누어 학문적 과정을 소개하며(Ⅱ), 여러 저서들의 서문(序文)을 통해 학문적 입장을 검토하고(Ⅲ), 학문하는 자세를 보는 것(Ⅳ)으로 맺으며, 연보와 논저목록 등을 제공하여 다른 연구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한다.<sup>6)</sup>

## Ⅱ. 삶의 역정과 학문

설송 선생의 삶의 역정은 크게 해방 전후로, 해방 전은 1930년 연희전문학교 부임을, 해방 후는 195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임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개한다.

### 1. 식민지기의 삶과 학문

#### 1) 출생과 교육(1902~1930)

雪松 鄭光鉉 선생은 1902년[光武 6]에 출생하였는데, 당시는 열강들의 세력균형을 바탕으로 大韓帝國이 자주적으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시기이었다. 선생의 아버지는 延日 鄭在命(1861.4.~1947.2, 아호 丹一)으로 집안은 전통명문가문이 아니었다.<sup>7)</sup> 그의 부는 일찍부터 개명하여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태극학회, 서우학회, 서북학회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공립평양보

5) 임상혁, 「설송 정광현의 성씨논고 에 나타난 법사상과 창씨개명」, 『家族法研究』 23-1(한국가족법학회, 2009) 참조.

6) 설송 선생 학문의 사상적 배경 등은 거의 파악할 수 없다. 그 자신이 철저한 실증법학자로 논문 집필에만 주력하여 회고적 글을 거의 찾을 수 없다.

7) 평안도의 재래유력가문을 정리한 《箕城儒林名家世誼譜》에는 연일 정씨가 보이지 않는다. 김선주, 「조선후기 평양의 사족」, 『세계사의 관점에서 본 조선시대 지역엘리트 사족』(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15) 참조.

통학교 學務委員과 평양부 협의회 회원 그리고 금융조합장을 지내는 등 평양의 유지이었고, 佐翁 尹致昊(1865~1945)도 그의 부친을 만나고서 부와 계모를 좋게 평가하였다. 동물학자인 그의 형 鄭斗鉉이 일본 유학 후 1936년 숭실학교 교장을 지내는 등 신흥 평양의 유력가문으로 보인다.<sup>8)</sup>

3·1독립운동이 일어난 1919년에 설송 선생은 현재의 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平壤 高等普通學校의 4학년 재학 중에 일본 東京으로 유학하였다. 1921년 3월 장로교 계통의 학교인 明治學院 中學部 4학년을 수료하고, 4월에 早稻田 第一高等學院 理科에 입학하여 한 학기를 다니다가, 1922년 4월 岡山 소재 제6 고등학교 문과 甲類에 입학하여 1925년 3월에 졸업하였다.<sup>9)</sup> 4월에 東京帝國大學 법학부 법률학과[英法科]에 입학하여 1928년 3월에 졸업하여 法學士 학위를 취득하였다.<sup>10)</sup> 재학 중에는 겔다트(Geldart)의 『영국 법개요(*Elements of English Law*)』와 젠크스(Jenks)의 『영국법요약(*A Digest of English Civil Law*)』 중의 친족법분야 관심을 가졌으며,<sup>11)</sup> 이를 바탕으로 첫해부터 약혼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韓國家族法研究』, 「序」, 9). 그 해 4월에 東京帝國大學 경제학부 경제학과에 학사편입하여 한 학기를 다니다가 9월부터 고향인 평양 숭실전문학교 교원<sup>12)</sup>으로 부임하여 1929년 결혼 때까지 근무하였다. 설송 선생은 동경에 유학 중인 평양출신들의 모임인 箕城[평양의 고명]學友會의 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在日本教育研究會의 졸업생 송별회와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등<sup>13)</sup>로 보아 유학생들과 교류를 하였다.

설송 선생은 1929년 3월 당대 명문가인 佐翁 尹致昊(1865-1945)의 3녀

8) 이상 정재명의 경력 등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에서 검색한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개별 출전은 생략한다.

9) 1911년 「조선교육령」에서는 일본의 중등교육기간(심상소학교[6년], 중학교[5년])은 11년인데 조선(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각 4년])은 8년으로 하여 조선에서 중등교육을 마친 후 곧바로 일본의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다. 그래서 대학에서 부설한 예비학교와 고등학교를 수료한 후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차별은 1922년 「조선교육령」의 개정으로 시정되었다.

10) 『동아일보』 1928.2.28.

11) 최중고, 앞의 책, 109-110쪽.

12) 崇實專門學校는 대한제국기에 대학인가를 받았지만, 「조선교육령(1915)」에 「대학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전문학교로 격하되었다.

13) 『동아일보』 1926.2.7, 3.4.

文姬와 서울 종로 YMCA회관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당일 신고를 하였다 (“부록 연보” 참조). 윤치호는 세간의 이목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과벌을 타파하기 위해 평양청년을 사위로 맞이하였는데(『윤치호일기』, 1931. 4. 19), 이 결혼에 대해 당시 장안에서는 말이 많았다. 윤치호는 “결혼식 후 서울의 잘 알려진 가문에서 평양 출신을 사위로 맞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난 조롱과 비난, 심지어 욕을 먹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1883년에 인력거를 탄다고 욕했고, 1907년에는 자전거를 탄다고 욕했다. 그러나 시간이 내가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주었다. 내 평양 사위가 성공을 입증해주었으면 좋겠다(『윤치호일기』, 1929. 3. 12)”라고 당시의 상황과 사위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었다.<sup>14)</sup> 윤치호는 “민족문화에 공헌할 것을 부탁·성원(『韓國家族法研究』, 「序」, 13)”하였는데, 아마 법학 중에서도 민족문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친족법에 매진한 것은 이 덕분일 것이다.<sup>15)</sup>

설송 선생은 결혼 후 평양을 떠나 서울로 이주하였다. 1930년 장녀가 출생하였고 이즈음에 연희전문학교 교원으로 부임하였다. 설송 선생은 일본서 귀국한 후 대개는 조선변호사시험이나 고등문관시험을 보고 법률가나 관료로 가는 틀에 짜인 길이 아닌 학자의 길을 선택하고 평생 그 길을 걸었다.<sup>16)</sup>

## 2) 연희전문학교 교원시절(1930~1937)

설송 선생은 1930년 4월 연희전문학교 교원으로 부임하여 1938년 12월 흥업구락부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로 사직할 때까지 법학 전임교원으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이화여자전문학교 등에도 출강하였다. 설송 선생은 연희전문에서 국내법제, 민법과 상법 과목을 강의하였으며,<sup>17)</sup> 이화여전에서 1930

14) 김상태, 『물 수 없다면 짓지도 마라: 윤치호 일기로 보는 식민지 시기 역사』(산치림, 2013), 310쪽.

15) 십사자 중 한 명이 “윤치호의 지역과타파와 민족문화에 대한 연구”에 대한 소개를 부탁하였으나, 이는 논지와 직결되지 않으므로 생략한다. 다만 윤치호는 조선의 독립이 당장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교육을 강조하였는데, 민족문화에 대한 연구가 독립의 기반이 됨을 인식하였다(박지향, 『윤치호의 협력일기』[이숲, 2010], 109-131쪽 참조).

16) 1951. 4. 26.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당일 등록하였지만, 활동하지 않았다(“부록 연보” 참조).

17) 자세한 내역은 정궁식, 「한국 근현대 법학교과과정 변천사」, 『法學論叢』 36-1(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6쪽 주32의 표 참조.

년 5월부터 1939년 1월까지 법제·경제 및 사회학을 담당하였다. 또한 사회 활동과 교내행사에도 참여하였지만,<sup>18)</sup> 재직 중에는 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삼천리』에서 연희전문의 교수를 소개하면서 “鄭光鉉도 있다, 문과에서 法制經濟를,商科에서는 民法과 商法을, 選擇科目에서는 特殊法令을 담당하였다”<sup>19)</sup>고 언급하였다.<sup>20)</sup>

설송 선생은 신문지면을 이용하여 대중, 특히 여성을 상대로 한 강연으로 계몽활동을 하였다.

부인을 위하여 법률 강연회: 오늘(金曜) 오후 두 시부터 종로 기독교청년회관 여자구락부실에서 일반부인들이 등한시하는 법률상식에 대하여 아모리 여자라도 보통상식으로 알지 아니하면 아니 될 법률강의를 여러 부인들에게 공개하리라는 데 강사는 일찍이 미국기자의 착오에 가서 법률경제를 마치시고 지금은 연희전문 이화전문 두 학교에 교수로 계신 정광현 선생이시라고 합니다. 기회를 노치지 마시고 다수히 참석하여 주기를 바란다고(『동아일보』, 1934.10.19).

설송 선생은 이때부터 논문을 집필하였는데, 처음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글로 주로 일간신문을 활용하여 계몽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때 李兌榮(1914~1998) 선생을 만난 것은 그 후 한국사회 변화의 큰 계기가 되었는데, 이태영 선생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1933. 3. 이화여전 본과 1학년에 “법률과 경제”과목이 있었고, 그 때 연희전문교수인 정광현 선생님의 특강이었다. 미남은 아니었고 옷차림이 단정하셨으며 말주변은 없었으나 강의내용은 충실하였다. 성품은 괴팍하였으나 학생 한명 한명에게

18) 1931년에는 李忠武公墓所와 1934년에는 圓坡[金祺中] 先生銅像 건립에 기금을 출연하였다(『동아일보』 1931.6.8; 1934.11.21) 그리고 연희전문 주취, 『동아일보』 후원의 “全朝鮮中學校陸上大會”에 위원으로 참여하였다(『동아일보』 1934.9.25, 1935.9.24).

19) 漢陽學人, 「左傾教授·右傾教授, 延禧專門教授層評(續)」, 『삼천리』 12, (1931.2.1); 三千里 機密室, 「專門學校의 푸로팻사群像 2」, 『삼천리』 7-8(1935.9.1)

20) 이화여전의 교수진을 소개한 「빛나는 梨花女專門 文科全貌」, 『삼천리문학』 1(1938.1.1)도 같은 내용이다.

관심을 보이신 교수다운 위엄을 보이셨다. 중간고사를 친 후 따로 불러 법률공부를 할 것을 격려했고, 그 때부터 졸업 때까지 개인지도를 하였으며, [법률경제연구회] 회원이 되어 공부하였다. 결혼 때, 평양까지 오셔서 축하하면서 “이제는 공부하기 걸렸다”라고 실망하셨다.<sup>21)</sup>

설송 선생으로부터 법학공부를 권유받은 이태영 선생은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되어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 설송 선생의 연구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 3) 학문의 중단: 사상범으로서의 시련(1938~1945)

설송 선생이 연전 교수가 되었을 때, 일본은 전시체제에 접어들었다. 일본은 만주사변(1930), 중일전쟁(1937) 등 대륙침략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선에서도 자유의 공기가 희박해져갔고 학교와 연구자도 속박이 다가옴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1936년에 부임한 南次郎 총독은 전시동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內鮮一體를 내세운 皇民化政策을 더욱 노골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축수는 독립운동단체만이 아니라 순수한 학술단체·사회단체로까지 뻗었다. 1938년 2월 연희전문학교 경제연구회사건은 同友會와 興業俱樂部로 확산되었는데, 이 단체들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의 독립운동세력과 연계되어 있으며, 또 그 구성원들은 학계와 언론계를 대표하는 지식인 집단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강하였다. 조선총독부는 強溫 양면정책을 구사하여 1938년 9월 思想轉向書를 받은 후 관련자 54명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1941년 11월 (조선)고등법원은 나머지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sup>22)</sup>

“홍업구락부” 사건에는 윤치호의 동생인 尹致榮[설송 선생의 처3촌]과 연전의 교수인 백남운, 이순탁, 노동규가 관련되었으며, 설송 선생 역시 옥고를 치렀다. 윤치호는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일기에 남겼다.

21) 이태영, 「설송 정광현 선생님」, 앞의 책, 207-8쪽.

22) 사건의 경과는 임상혁, 앞의 글, 89-91쪽 참조.



1938.5.16: 최근 두 달 동안 연희전문학교가 곤경에 빠졌다. 백남운, 이순탁, 노동규 교수가 도서관에 공산주의 서적을 기증했다는 이유로 수감 중이고, 경찰이 학교 전체를 수색했으며, 정광현 이춘호도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이는 총독부가 연희전문학교를 폐교시키거나 선교사로부터 빼앗기 위한 술책이다.

1938.5.25: 김대우가 보완과장과 전화한 후, 가장 가까운 이[정광현]에 대해서는 걱정마라는 전갈을 하였다.

1938.7.9: 정재흡이 가족들을 미워하는데, 그 이유는 정광현 등을 빼낼 수 있는데도 자기에 청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거짓말쟁이고 또 정광현이 구치소에 가기 전에 刑을 살게 되더라도 정재흡에게 청탁하지 말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1938.8.27: 원한경 박사가 서대문경찰서에 소환되었고, 유억겸, 이춘호 최현배, 홍승국 등이 사직을 하였으며, 정광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sup>23)</sup>

위에서 사위를 걱정하는 윤치호의 모습과 고난에 의연히 대처하는 설송 선생의 굳건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sup>24)</sup> 선생은 1938년 5월 12일 서대문경찰서에 구치되어 190일이 지난 12월에 기소유예처분<sup>25)</sup>으로 석방되었지만 자유를 얻지 못하였고, 석방과 동시에 1939년 1월 「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에 의하여 사상전향기관인 大和塾에서 수개월간 강제수련을 받았다.

위 「관찰령」은 기소보류·유예처분을 받아 석방되거나 복역 중 가석방된 사상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악법이다. 1935년 일본은 「치안유지법」을 개정하여 예방구금제도를 신설하려고 하였으나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여 포기하고 그 대신 1936년 5월 「사상범보호관찰법」을 제정하였고, 그해 12월 위 「관찰

23) 김상태, 앞의 책, 445, 451, 467, 481쪽.

24) 국사편찬위원회에는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文書 중에 “延禧專門學校 同志會 興業俱樂部 關係報告”로 1)延禧專門學校 學內組織에 관한 건, 2)在美革命同志會 朝鮮支部인 秘密結社 興業俱樂部事件 檢舉에 관한 건, 3)[興業俱樂部] 關係者 名簿, 4)延專赤化事件에 관한 건“ 등 관련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25) 흥업구락부는 1938년 9월 3일 “민족자결의 망상에서 벗어나 ... 신일본구성의 유력한 일원이 되겠다”는 전향서를 발표하고 자진 해산하였으며, 정광현은 교직에서 사퇴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임상혁, 앞의 글, 91쪽).

령」(制令 16)을 공포하여 12월 21일부터 위 법률을 의용·시행하였다. 그 내용은 형의 기소유보처분을 받은 자, 형의 집행이 끝난 자, 가출옥한 자(§1)에 대해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상과 행동을 관찰하며(§2), 보호관찰소가 하거나 보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3), 거주, 교우, 통신의 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의 준수를 명할 수 있으며(§4), 그 기간은 2년이며 갱신할 수 있다(§5).<sup>26)</sup> 이는 보안처분으로 사상의 전향을 강요한 것이다.<sup>27)</sup>

설송 선생은 아마 1939년 중에 석방되었을 것이지만, 여전히 경찰로부터 감시를 당하는 신세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944년 4월 10일 朝鮮總督府 中樞院 舊慣制度調査課 명예촉탁이 되어 친족상속관습에 대한 조사·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sup>28)</sup> 이때에 첫 저서인 『성씨논고』를 출판하였다.<sup>29)</sup>

감시 하에서는 자유롭게 글을 쓸 수가 없었다. 1939년부터 해방될 때까지의 글은 주로 「조선민사령」에 대한 것이며, 전시체제와 관련된 글도 있는데, 군국주의 체제가 더욱 강화되어 사상을 감시하고 전향을 강요한 「조선사상범예방규금령」<sup>30)</sup>에 대한 해설까지 발표한 것은 아이러니이다. 또 저작권법에 대한 첫 논문과 이전의 문제의식을 이어 여성과 관련되는 글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일본인의 한국법제시에 대한 저서에 대한 논평도 잊지 않았다.

26) 鈴木敬夫, 『법을 통한 조선식민지 지배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9), 251-261쪽.

27) 황민호, 「전시통제기 조선총독부의 사상범 문제에 대한 인식 통제」, 『사학연구』 79(한국사학회, 2005) 참조.

28) 이때의 작업은 유일필사본인 『(續)民事慣習回答彙集』으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설송문고에 남아 있다.

29) 『동아일보』 1940.2.12. 1면 광고 전단광고 東光堂書店 발행, 姓氏論考.

30) 「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1941.2. 제령8)은 사상범 중 비전향자에 대한 조치로 「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 2. 해방과 삶, 그리고 학문

### 1) 과도기(1945~1950)

해방이 되어 일본은 물러가고 그 대신 미군이 진주하였지만, 설송 선생의 삶에 당장은 큰 변화가 없었다. 미군정은 민족차별과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법령만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일본법령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실무적으로 친족상속에 대한 관습은 중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설송 선생은 미군정청 법무부에서 같은 일을 계속하다가 1946년 4월 法務官으로 군정법령 사무를 담당하였으며, 10월부터 1948년 7월까지 미군정청 中央管財處 次長으로 귀속재산관계법령 및 예규의 기초를 담당하였다.

부임 직후부터 설송 선생은 적산 관련 각종 법령을 정리하여 『敵産關係法規 並 手續便覽』(東光堂書店, 1948)[200쪽]을 간행하였다.<sup>31)</sup> 저자의 사정, 전력·용지난 등으로 제작 자체가 힘들었으며 또 기타 중요법령도 준비하였으나 완성하지는 못한 채 일부만 간행하였다. 金準平은 이 저서를 “조선총독부 및 일본인의 재산인 적산의 관리와 처리에 대한 정책과 법령, 절차규정 등을 정리한 것이며, 당시 영문으로 된 것은 번역하거나 오역을 바로잡아,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집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sup>32)</sup>

해방 전후의 어수선한 시기이어서 설송 선생은 학문적 활동보다는 현실문제의 해결에 주력하였으며, 상이탐에만 파묻힌 학자가 아닌 실천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 2) 서울대 법대 교수, 그 후(1950~1980)

설송 선생은 1949년 2학기 서울대 법대의 강사로 피촉되고 1950년 1월에 전임교원으로 부임한 후, 1962년 8월에 박사학위를 받음과 동시에 정년퇴임을 하고, 9월에 명예교수에 임명되었다가, 법 개정으로 1966년 5월에 다시

31) 미군정청에서 “중앙관재처에서 전용하는 자료를 편집한 책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처분을 하였고, 출판사에서는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므로 딴 군정장관에게 해제를 요구하였다. 『조선일보』 1948.7.31. 참조.

32) 『동아일보』, 1948.7.8.

임명되어 1967년 8월에 퇴직하였다.<sup>33)</sup> 1971년 11월 26일 지병인 고혈압 치료를 위해 자녀들이 있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귀국을 약속하였다.<sup>34)</sup>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1980년 12월 7일 향년 79세로 메릴랜드대학 부속병원에서 영면하였고, 1981년 2월 19일에는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추도식을 거행하였는데, 신문에서는 추도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한국가족법 개척자 정광현 박사 추도식: 우리나라 가족법의 개척자인 雪松 정광현 박사 추도식이 21일 오후 2시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열린다.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정박사는 가사심판법의 기초위원과 가족법연구회 회장으로 우리나라 가족법 정립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었다. ... 이번에 이태영, 김치선, 김용한, 박병호 씨 등이 추도식을 마련했다(『동아일보』 1981. 2. 19, 『경향신문』 1981. 2. 23).

1962년 6월 4일 회갑연을 하였으며, 1963년 8월에는 학술부분 문화포장을, 1966년 6월에는 제11회 학술원상 공로상을, 1970년 광복절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았다. 그리고 1961년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할 때에 선거인단으로 입후보하였다.<sup>35)</sup>

설송 선생은 민법전 공포 전에는 법전편찬위원회로서 활동하면서 법전편찬위원회의 친족상속법 초안에 대한 분석·비판에 주력하였고, 法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교법적 시야를 견지하였다. 그는 보수성이 강한 시대에 살면서도 철저하게 남녀평등을 주장하였고, 학술적 활동을 정일형 의원이 제출한 “민법안 수정안”으로 입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였지만, 당시의 분위기 탓으로 무위에 그쳤다. 그러나 이후 민법의 개정에서

33) 5·16 군사정권은 대학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1961. 708)」을 공포하여 정년은 65세에서 60세로 내리고,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명예교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15). 설송 선생은 나이로만 기준을 삼는 위 특례법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비판하였으며, 교수에 대한 평가는 연구능력을 판단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동아일보』 1963.10.24). 1964년에 위 법을 폐지하여 정년이 65세로 회복되었다(법 1466). 정하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제도의 변천 그리고 우리의 역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10(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14) 참조.

34) 『경향신문』 1971.11.27; 『동아일보』 1971.11.27.

35) 『경향신문』 1961.5.8.

대부분의 내용이 반영되었다.<sup>36)</sup> 1958년부터는 제정민법과 호적법 등에 대한 연구에 진력하여 법해석학 연구에 몰두하였으며, 특히 식민지기 여성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연장에서 사실혼을 準婚的 지위까지로 상승시켰다.<sup>37)</sup> 또 상속법에서는 소급입법주의를 취하였기 때문에 판례평석 등으로 정확한 상속관습을 정립함에 노력하였다. 가족법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복잡다단한 관습법 法源의 구명이 주된 관심이었다. 이는 한국법제사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또 불모지인 한국법제사 연구를 적극적으로 격려했다.<sup>38)</sup> 비록 입법에서는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선생은 민주적 가족을 현장인 법원에서 실현하기 위해 1963년에는 「家事審判法」 기초위원회 위원과 가사조정위원으로, 가정법원의 홍보위원·조정위원으로 활동하였다.<sup>39)</sup>

설송 선생은 1953년 가을 국내 최초의 법연구전문기관인 “중앙법률연구소”의 설립과 활동에 관여하였다. 미국 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스토리, 제롬 홀 등을 고문으로, 이한기, 강명옥, 정광현 등 서울대 법대 교수가 중심이 되어 영미법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여 1958년에는 『영미법사전』(백영사, 447쪽)을 간행하였다.<sup>40)</sup> 1963년 11월에는 한국민사법연구회(회장 이희봉) 월례발표회에서 “事實婚의 保護”를, 1967년 6월에는 동아시아, 터키, 이스라엘, 호주, 뉴질랜드 등 18개국과 업저버 국인 미국과 영국의 법률가들이 참가한 아시아법률가대회에서 민사법분야 주제 발표<sup>41)</sup>를 하는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설송 선생은 학술지만이 아니라 신문 등 다양한 지면을 통하여 민법의 비

36) 윤진수, 「한국민법학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기여」, 『서울법대 학문연구 70년』(2016.1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주최 학술대회 자료집) 참조.

37) 1911년 제정 「조선민사령」에서는 혼인에 대해서는 관습에 일임하였기 때문에 결혼식과 동거로 혼인이 인정되었으나, 1922년 「조선민사령」의 개정으로 혼인에서 신고주의가 도입되었다(1923. 7. 1. 시행). 그러나 혼인식을 거행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예가 많았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권장하기 위해 결혼식장에 신고서식을 갖추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경향신문』 1961.8.27. 餘滴 참조).

38) 박병호, 앞의 글, 142-3쪽.

39) 『경향신문』 1963.4.3., 10.1, 10.8.

40) 서돈각, 「그 시절 그 사진」, 『경향신문』 1992.5.27.

41) 『동아일보』 1963.11.20; 1967.4.4.

민주성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다. 민법전 편찬 당시에는 헌법을 반영하고 세계인권선언을 참작해야 함을 공청회 등에서 주장하였으며,<sup>42)</sup> 민법시행 후에는 법률상담<sup>43)</sup>과 강연<sup>44)</sup> 그리고 지상논쟁<sup>45)</sup>으로 학문적 입장을 널리 알렸다. 그러나 학문적 입장과 달리 현행법에 반대되는 해석에 대해서는 실증주의 입장에서 비판하였다. 남편과 사별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을 검찰이 존속폭행으로 기소하지 않자 “親族法 知識이 없는 所致”라고 비판하였다.<sup>46)</sup>

설송 선생이 발표한 논문은 사후에도 중요한 논쟁의 대상으로 회자되었다. 1965년 『Fides』에 발표한 <판례평석: 혼전부정과 이혼>은 정범석, 이근식, 김주수 등이 논쟁을 하였는데, 이는 1982년 “화제의 논쟁, 갈채의 승부 뒤안길”로 소개되었다.<sup>47)</sup>

### 3) 도서관과 저작권법

설송 선생은 학문융성의 터전인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1952년 4월 1일에 법과대학 도서관과장을 맡았고 9월 5일부터 10년 동안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장으로 재직하였다(역대 최장수 관장).<sup>48)</sup> 그리고 도서관에 관한 사회단체의 임원직을 역임하여 우리나라 도서관, 특히 대학도서관의 기틀을 구축하는 데에 큰 공헌을 하였다. 6·25 전쟁으로 흐트러진 서울대 도서관의 재건·정돈·발전에 길이 기억될 업적을 남겼다. 특기할 것은 서울대 도서관 소장의 5만여 매에 달하는 고문서의 정리에 착수하여 한학자인 장지태,<sup>49)</sup> 朴秉濠 선생이 정리하도록 하였는데,<sup>50)</sup> 이는 한국법제사와 고문

42) 『경향신문』 1957.4.8., 11.30.

43) 『경향신문』 1963.8.23.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과 그 후에 발생할 자녀의 入籍 등이다.

44) 『경향신문』 1964.7.16; 대한어머니회 월례회에서 “세계모권비교”로 강연을 하였다.

45) 『경향신문』 1964.5.12; 동성동본 혼인의 존폐에 대한 논쟁인데, 이태영, 이항녕, 송운호, 김모, 전동수(의사) 등이 참여하였다.

46) 『동아일보』 1970.10.2; 검찰은 온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47) 『동아일보』 1982.2.26~1982.3.5. 참조.

48) 도서관을 중시하여 부산 전시연합대학 시절 연락사무소인 텐트에 어울리지 않는 지나치게 크고 긴 도서관의 간판을 걸어두었다(이하윤(6), 「노교수와 캠퍼스와 학생(128)」, 『경향신문』 1974.2.22).

서학이 본격적인 학문으로 자리를 잡는데 초석이 되었다. 또 사회 전반에 도서관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였다.<sup>51)</sup>

그는 부산 전시연합대학 체제에서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장을 맡았다. 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전쟁 중에 임시도서관을 개관하였고, 전후 복구의 책임을 떠안았다. 당시 도서관의 사정은 70여만 권의 도서 중에 규장각도서 1만여 권과 기타 4천 권만 부산으로 이송되었고 나머지는 서울에 그대로 있었다. 환도 후 두 달여의 준비를 거쳐 1953년 12월 1일 도서관이 다시 개관되었다. 그 때 수십만 권의 장서가 뒤엉켜 있었지만, 다행히 대부분의 장서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선생은 비용의 절약, 도서순환의 효율성 제고, 이용의 통계처리 등을 논의하고 부속도서관과 단과대학 도서관의 연결을 시도하였다.<sup>52)</sup> 또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체제를 갖추고, 도서관의 인적들을 갖추는데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61년 4월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司書職列이 독립되었으며, 5월 「국립대학교설치령」이 개정되면서 도서관의 직제와 직무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로써 도서관의 행정인력이 법제화되어 본격적인 행정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으로 연구와 학습을 지원할 수 있었다.<sup>53)</sup>

한편 설송 선생은 대중계몽도 중시하여 도서주간을 맞이하여 <도서관 이용법 안내>을 소개하여 도서관이용을 적극 권장하였다.<sup>54)</sup> 1956년 8월과 1957년 10월에는 한국도서관협회장에 선임되었고, 1960년 10월에는 국립도서관과 서울대 도서관의 상호대차를 논의하였으며, 11월에는 대학도서관의

49) 張之兌(1892~1962):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조선총독부 참서관실과 경성제국대학 조수로 근무하였으며, 한문 실력과 명필 그리고 현장경험을 구비하여 규장각도서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이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사서관으로 임명되었다. 박종근, 「雲樵 張之兌선생님」, 『도우회보』(서울대학교 도우회, 1998) 참조.

50) 당시 고문서정리카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박병호, 「고문서자료의 수집·정리 문제」, 『근세의 법과 법사상』(진원, 1996), 659쪽.

51) 박병호, 앞의 글, 145-6쪽.

52) 『대학신문』 1953.11.30; 1955.2.6.

53) 편집위원회, 『서울대학교 도서관50년사: 1946~1996』(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1996), 25-30, 59, 71쪽.

54) 『동아일보』 1954.11.14.

현실을 언급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지원을 요청하는 등<sup>55)</sup> 도서관의 진흥과 이를 통한 학문의 융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도서에 대한 사랑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생전에 장서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서울대학교에 기증하여 중앙도서관 “설송문고”로 보존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기증하였다.<sup>56)</sup>

설송 선생은 일찍이 저작권에 관심을 가져 1940년에 저작권에 대한 첫 논문<sup>57)</sup>을 발표하는 등 저작권법의 최고권위자이었으며, 1953년부터 1959년 사이에 7편의 논고를 발표하였는데, 그 필요성, 저작권법안의 비판·해설 등이 중심이었다.<sup>58)</sup> 단행본을 저술할 계획이었지만, 병환으로 이루지 못하였다.<sup>59)</sup> 1956년 저작자보다는 출판사를 우선하는 저작권법 초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였으며, 1960년에는 저작권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그의 저작권법연구는 황적인 선생으로 이어졌다.<sup>60)</sup> 그리고 현상공모에 당선된 문학작품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문학창작활동을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그 의지를 꺾는 것으로 보아 반대하였다.<sup>61)</sup>

### Ⅲ. 논저의 소개

설송 선생은 1931년부터 1978년까지 저서 10권, 논문 136편 등 총 146편의 저작을 발표하였다. 선생이 연보에서 “민법, 저작권법, 도서관 관계, 기타”

55) 『경향신문』 1956.8.2; 『동아일보』 1957.10.17; 1960.10.26; 1960.11.8.

56)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1974년 「설송문고목록」을 간행하였으며, 1,469책이다. “설송 선생이 미국으로 가면서 1천 권을, 임종 전에 23상자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보냈다”고 하는데(이태영, 앞의 글, 210, 213쪽),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확인할 수 없다.

57) 『朝鮮日報』(1939.11.17.~21)에 발표한 「朝鮮民事令改正을 中心으로」의 후반부를 필자나 신문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게재한 잡지에 대해 당시 저작권법 조문을 제시하고 저작권법위반임을 지적하였다(『韓國家族法研究』, 45쪽).

58) 황적인, 「鄭光鉉 교수의 약력과 업적」, 『아세아여성법학』 7(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04) 참조.

59) 박병호, 앞의 글, 145쪽.

60) 이상정, 「성헌 황적인 선생님과 저작권법」, 추모논집간행위원회, 『誠軒 黃迪仁 先生님의 학문과 삶의 세계』(화산미디어, 2015) 참조.

61) 『동아일보』 1956.2.25, 28; 1963.8.23; 1963.9.3.



등 4개로 분류하였는데, 그의 삶의 여정에 따라 보면 다음과 같다(내역 부록 참조).<sup>62)</sup>

연도	저서	논문					계
		민법	저작권	도서관	기타	소계	
1930~38		5			1	6	6
1939~45	1	6	1		3	10	11
1945~49	1						1
1950~59	2	30	7	8		45	47
1960~80	6	69		4	2	75	81
전체	10	110	8	12	6	136	146

\* 재판은 제외, 연재물은 첫 간행물 발표 기준

설송 선생은 대부분 민법, 그 중에서도 친족·상속법, 특히 친족법만 집중적으로 연구하였고 주된 관심은 한국가족, 나아가 한국사회의 민주화이었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민주화의 핵심으로 보고 이를 실현함을 일생의 화두로 삼았다. 민법전 편찬 과정에는 입법론으로, 후에는 해석론과 판례평석으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가정법률상담소의 설립과 활동을 후원하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또 저작권법과 도서관에 대한 학문적·실천적 활동으로 확장되어 전후의 척박한 사정에서 학문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설송 선생의 개별논문에 대한 평가는 필자의 역량을 훨씬 넘는 것이기에 생략한다. 여기에서는 저서의 서문과 그에 대한 서평, 박사학위논문 등을 소개하여 학문적 풍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姓氏論考: 朝鮮家族法論考』, 東光堂書店, 昭和15[1940] 3, 8쪽, 283쪽[총 294쪽].

1939년의 「조선민사령(制令 19)」 개정과 「朝鮮人の 氏名에 관한 건(제령

62) 정년퇴임 이후인 1968년부터 타계할 때까지는 저서 1편, 민법·기타 각 2편을 발표하였다.

20)의 시행에 따라 1940년 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창씨개명<sup>63)</sup>에 대비한 저서이다. 서술에서 평이함을 도모하면서도 통속적 기교에는 빠지지 않았으며, 문헌을 정확히 인용하였다. 2/3는 新稿이며 나머지는 관련 논문을 수록하였다.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제2장 姓氏論考

제3장 創氏論考

제4장 在來의 호적은 어떻게 변하는가

제5장 氏名變更의 방법(姓字를 「名」에 넣어 改名할 수 있는가)

제6장 朝鮮婿養子緣組論

제7장 朝鮮養子離緣論

제8장 朝鮮民事令改正을 중심으로

제9장 朝鮮女性の 法律

제10장 氏選定 및 改名에 관한 法務局長通牒

제11장 朝鮮民事令改正과 「氏」制度에 관한 當局 談

부록 (最新)朝鮮家族法關係重要法令集

이 저서는 1940년 3월 10일에 간행되었는데,<sup>64)</sup> 우선 창씨개명의 시행을 두고서 계몽적 차원에서 집필한 것으로 보인다.<sup>65)</sup> 위에서 본 것처럼 설송 선생은 흥업구락부사건에 연루되어 연희전문학교에서 강제퇴직한 후 1939년 1월부터 大和塾에서 강제수련을 받으면서 집필하였다.<sup>66)</sup>

63) ‘創氏改名’은 “[성을 없애고] 씨를 창설하고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친다”는 의미이다. ‘姓’은 “부계 혈연”의 표지이며 따라서 혼인이나 입양 등으로 변경되지 않는다[‘父系血緣’ 규칙], ‘씨’는 “家”의 표지이며, 혼인이나 입양 등으로 가에 入籍하게 되면 그 가의 씨로 변경되어야 한다[‘家’ 규칙]. 家[호적]를 같이 하는 경우에 조선인은 婦人과 며느리는 성을 다르지만, 일본인은 씨가 모두 같아야 한다(坂元眞一, 『“明治民法”의 성씨제도와 “創氏改名”(朝鮮)·“改姓名”(臺灣)의 비교분석』, 『법사학연구』 22[한국법사학회, 2000] 참조).

64) 1940년 3월 16일에 재판이 발행되었다.

65) 定村光鉉으로 창씨개명하였는데, 성 ‘鄭’을 ‘定村’으로 창씨만 하였는데, 이는 개인의 결정인지 집안 [문중]의 결정인지는 알 수 없다.

내용은 조선민사령의 개정내용과 조선의 관습과의 문제 및 內鮮 법제의 관련성 및 법률지식의 필요성과 상식과 다른 법률 등 창씨개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술하였다(제1장). 성씨 등에 대한 역사적 서술과 법률적 문제 및 창씨제도와 관련된 실무적 문제를 소개하였다(제2, 3장). 실무적인 문제로 기존 호적의 변화, 구체적인 변경절차, 종래 인정되지 않은 서양자제도<sup>67)</sup>와 그 파악 등을 설명하였다(제4~7장). 이미 발표한 논문을 수록하였고(제8, 9장) 창씨개명의 시행에 대한 조선총독부 당국의 입장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수록하였다(제10, 11장).<sup>68)</sup> 부록에서는 조선민사령, 조선인사조정령, 조선호적령과 부속 법령 14개를 수록하였다.

선생은 창씨개명의 핵심적인 목적은 ‘內鮮一體’, 즉 민족말살임을 파악하고 형식적으로 창씨를 하면서도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식으로 창씨를 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고유성을 지키면서도 창씨를 할 수 있도록 조선과 유사한 일본의 氏를 53개와 姓에 1字<sup>69)</sup>를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sup>70)</sup> 그리고 分家와 재산상속에 대한 조선의 관습을 들어 분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창씨를 하지 않은 것을 긍정하였다.<sup>71)</sup> 설송 선생은 표면적으로 민족주의자 내지 사회주의자라는 의심을 피하면서도 속으로는 민족의 고유성을 말살하려는 정책에 반대하였다.<sup>72)</sup>

그리고 창씨의 실시 후에는 전래의 ‘姓’이 폐지되고 ‘氏’가 성을 대신한다는 安田幹太의 견해<sup>73)</sup>를 비판하여 ‘氏’는 ‘姓’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66) 이회봉 선생은 일본의 정책에 반발한 것으로 보았다(③ 『韓國家族法研究』에 대한 서평 참조).

67) 婿養子制度는 異姓인 사위를 양자로 삼아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로, 창씨개명과 함께 도입되었다. 이는 동화정책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개인의 표지에서 차별을 철폐하여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의도이다(鄭肯植, 『韓國近代法史攷』[박영사, 2002], 197-9쪽).

68) 임상혁, 앞의 글, 96쪽.

69) ① 유사 성: 金(金俊三[북해도 在籍, 大阪市 토목부 근무] 등), ② 1字 추가: 金(金家, 金井, 金子 등).

70) 『姓氏論考』, 45-66쪽.

71) 창씨개명은 자진하여 창씨를 하는 ‘任意創氏’(1942. 11~ 8.10)과 당시의 姓이 氏로 되는 法定創氏 두 종류가 있었으며, 법정창씨가 약 80%이었다(鄭肯植, 앞의 책, 198쪽).

72) 임상혁, 앞의 글, 96-100쪽 참조.

73) 安田幹太, 「朝鮮民事令중 改正에 관한 制令 解説」, 『京城日報』 1939년 11월 10~12일(『韓國家族法研究』, 58-63쪽 수록). 이는 安田幹太(전 경성제국대학 교수, 변호사)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조선총독부 법무국장 등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보아야 한다.

로 생겼으며 따라서 氏 설정 후에도 재래의 성은 변경이 없으며, 일상용어로 雅號를 쓰는 것처럼 舊姓名을 사용해도 무방하며 또 창씨개명 후에도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구성명을 사용하는 것을 과도기적 현상으로 긍정하였다.<sup>74)</sup>

당시 시국상황과 설송 선생이 처한 입장에서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sup>75)</sup> 설송 선생은 위 저서에서 총독부의 정책을 지원하면서도 기술적으로 가족법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였다.

## (2) 교과서

㉔ 『(韓國)親族相續法講義[上卷]』, 葦聲文化社, 1955[1957 재판], 301, 74쪽.

민법전 편찬 이전에 法源은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이고 또 당시에 정부의 민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저술하였다. 이전의 강의경험에 바탕을 두고 정부초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법해석 외에 법제사적 고찰, 초안에 대한 해설과 논평, 외국의 입법례 등을 제시하였다. 현행 친족상속법에 관한 회답, 통첩, 결의, (조선)고등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조선민사령」 중 관련 조문을 소개하였다. 사회학자 김두헌, 국회의원 장경근, 장승두, 고려대학교 교수 金安鎭의 저술과 이병도, 홍이섭, 張之兌, 전봉덕의 학술적 도움과 중앙법률연구소의 고병국, 金炳觀, 이태영, 황운석의 도움이 있었다. “서론”에서는 역사적 설명을, “전편 친족법”에서는 성씨, 친족관계, 혼인법만을 다루었고, 친족법의 다른 분야와 상속법은 다루지 못하였다.

전봉덕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해방 이후 법학계 최대의 업적으로, 가족

74) 『韓國家族法研究』, 49쪽, 150-1쪽.

75)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조선총독부가 겉으로는 창씨개명을 권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의 고유성을 보존하는 이 저서의 출판을 허가한 이유이다(일제하의 출판상황에 대해서는 이종연 『책의 운명: 조선-일제강점기 금서의 사회·사상사』[혜안, 2001] 참조). 설송 선생의 명망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창씨개명을 확산시키려는 조선총독부의 의도와 법적으로 강제되는 창씨개명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면서도 민족성을 온존시키려는 설송 선생의 의도가 일치한 吳越同舟, 同床異夢의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설송 선생은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이용하여 학문적 신념을 관철하였다.

법 저술에는 한국의 역사와 법에 대한 소양이 필수이다. 이전에는 일본 실무가의 저술, 학술적인 것으로 경성제국대학 교수 藤田東三의 조선친족상속법과 김안진의 친족상속법이 있다. 安貧樂道하는 학자이며 법학은 물론 법제사회사에 토대를 둔 연구이다. 거의 모든 문헌을 전거를 밝히고 인용하고 비판하였다. 성문법이 없어서 판례와 관습이 법원인 상황에서 이들이 법원으로 활용된 자료를 소개하였으며, 처의 능력, 부부재산제, 이혼 등에 대해서는 비교법제사적 접근을 하였다.<sup>76)</sup> 또 김주수는 “전통적인 혼인법제를 소개하고 법원인 구관습을 체계화하였으며, 기본 연구자료를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sup>77)</sup>

㉠ 『新親族相續法要論』, 葦聲文化社, 1958, 467쪽.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민법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서이다. 다른 분야와 달리 친족상속법은 식민지의 영향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였기에 당시의 논의를 참조하였으며, 본인의 논문도 이용하였다. 김용한, 안이준, 김주수, 박병호 등이 내용적으로, 柳東烈과 손창희가 정서와 교정을 도왔으며, 외국 문헌의 입수에는 미국 한국학의 대부인 하버드대학 교수 와그너<sup>78)</sup>가 도왔다.

㉠ 『新親族相續法要論』, 法文社, 1959, 467쪽.

〈저서 ㉠〉를 대폭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신병 때문에 誤字 정도만 수정하고, 廢家, 근친혼의 금지와 취소, 親生嫡出子女에 대한 부분만 개정하였다.

76) 『경향신문』 1955.3.30.

77) 金疇洙, 「鄭光鉉 博士의 婚姻法」, 앞의 책, 140쪽.

78) Edward W. Wagner(1924~2001): 1941년 하버드대학에 입학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1959), 미군정청에 근무하였고(1946~48), 서울대에서 한국사를 연구하였다(1955~58). 하버드대학 교수로 재직하였다(1959~93). 옌칭(Yenching)도서관 한국학 자료실을 구축하는 등 미국에서 한국학의 바탕을 닦았다. 에드워드 와그너/ 이훈상·손숙경,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일조각, 2007) 참조.

㉔ 『新親族相續法要論』, 法文社, 1961, 605쪽.

호적법과 호적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저서 ㉔>에서 호적 관련 부분을 보완하였다.<sup>79)</sup>

㉕ 『新民法大意(下)』, 博英社, 1962, 310쪽[공저자: 金疇洙·金容漢].

이영섭이 대표로 민법의 전반을 소개할 목적에서 간행한 것이다. 저자는 친족상속법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法源이 관습법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워 소홀히 한 경향이 있음을 비판하였다. 우리 친족상속법은 헌법의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이념으로 삼고 있지만 내용은 宗法制를 기반으로 하여 후진적이며, 따라서 개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입법론까지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3) 『韓國家族法研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1967, 14, 852, 653[총 1,519쪽].

1925년 동경제대 법학부 입학 당시 약혼문제를 연구한 것이 계기가 되어 가족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韓國家族法研究』, xi). 정년을 기념하여 기존의 논고를 정리하고 가족법 관계 연구자료를 집대성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착수하였고, 유기천, 沈相煌의 격려로 완성되었다(xi). “第1編 家族法史”에서는 舊稿를 정리하였으며, “第2編 家族法 關係 研究資料”에서는 1) 식민지기, 2) 대한민국 법무부의 관습자료, 3) 입수가 힘든 식민지기 판결 등을 수록하였으며, “第3編 親族相續編 立法經過와 그 批判”에서는 입법경과 및 정부안 각종 수정안에 대한 비판과 입법론적 고찰에 관한 구고를 보완하였으며, “第4編 現行家族法의 解釋論과 判例研究”에서는 구고를 보완하였다. “附錄編 親族相續編의 立法資料”에서는 정부안과 각종 의견서, 공청회와 국회속기록 등을 망라해서 수록하고 또 민법조문을 부기하였다. 상속법은 민법시행 후에도 관습법이 법원이어서 수록하려고 하였으나 지면 관계상 수록하지 못하여 증보판을 기약하였지만, 완수하지는 못하였다.

79) “친족상속법 개정판을 집필중이며 절반을 완성했다”는 보도가 있다(『경향신문』 1963.8.13.).

선생은 40년간의 학구활동의 결정이지만 부족한 것이 많음을 자책하면서 자신을 학문의 길로 이끈 장인이신 佐翁 尹致昊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다. 박병호, 유동렬, 배경숙, 황적인, 양승규, 구연창, 金秉學, 林奈敬, 金貞子, 韓明淑, 韓智淑, 金吉子, 李光子, 李貞子, 鄭庚源, 趙南珍, 徐明姬, 李榮順 등이 실무적으로 도왔으며, 배정현, 한성수, 기세훈, 盧世愚, 韓奎星 등은 판례조사를, 박윤흔은 법령조사를 도왔다. 이 책은 아세아재단의 지원으로 간행되었다. 본문 4편과 부록으로 된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편 家族法史

제1부 家族法の 法源(4절), 제2부 婚姻 및 離婚法史(3절), 제3부 戶籍制度史(4절), 제4부 姓氏論(8절)

제2편 家族法 關係 研究資料

제1부 慣習質疑에 대한 中樞院回答(16건), 제2부 中樞院 調査課 慣習調査資料(4건), 제3부 大韓民國 法務部の 慣習調査資料(2건), 제4부 舊法時代의 家族法關係 重要判決(11건)

제3편 親族相續法 立法經過와 그 批判

제1부 親族相續法 立法經過概說(3건), 제2부 親族相續編의 要綱과 草案에 관한 分析과 管見(8건), 제3부 親族相續法에 대한 立法論的 考察(3건)

제4편 家族法の 解釋論과 判例研究

제1부 現行家族法の 解釋問題(4절), 제2부 現行家族法 判例研究(6건)

부록편 親族相續法 立法資料(세목차 별도)

제1부 張暉根氏의 親族相續法 立法方針 及 起草要綱私案(1쪽)

제2부 張暉根氏의 民法 親族相續法編 原要綱解說(12쪽)

제3부 親族相續法編에 관한 政府案 各種修正案 및 意見書(46쪽)

제4부 親族相續法編에 관한 民法案 公聽會 記錄(162쪽)

제5부 親族相續法編의 國會 審議經過(249쪽)

家族法 關係 文獻編(2단 조판; 583~626쪽) / 색인(사항, 법조문, 판례, 인명)

/ 저자 연보

이 책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부록’이다. 설송 선생은 단순히 국회속기록 등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편집하였다: ① 발언에는 표제어를 붙였으며, ② 기록이 불분명한 것은 전후 맥락과 내용을 검토하여 바로잡았으며, ③ 방언이나 중복된 발언도 그대로 수록하였고, ④ 국회의원의 초점을 벗어나거나 의사진행발언은 생략하였지만, 법률지식의 부족, 심의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한 발언은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그대로 수록하였고, ⑤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국회의원의 발언에 민법의 조문을 부기하였다. 이것만으로 민법 친족상속편의 입법경과와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족법 관계 문헌편>에서는 12개 장<sup>80)</sup>으로 구분하여 소상히 소개하였는데, 학술지만이 아니라 일반대중잡지, 신문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기도 1914년까지 올라가는 문헌목록의 집대성이다. 선생은 현행법 자료, 법제사자료를 쫓아다니며 수집하여 그 방면의 그야말로 살아있는 ‘법학도서관’이다.<sup>81)</sup> 이러한 자세는 도서관장으로 재직하면서 문헌수집의 중요성을 체감한 결과이다.<sup>82)</sup> 그리고 이 저서는 대학출판부가 지향해야 할 우량도서출판의 모범으로 제시되어 출판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sup>83)</sup>

이 저서에 대한 이회봉(1916~2001) 선생의 장문의 서평이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84)</sup>

‘法源史’에서는 요령 있게 정리를 하였으나, 남녀균분의 재산상속을 규정하여 서구에 비교해서도 합리적이고 상세한 ‘經國大典 刑典 私賤條’와 가족제도의 바탕이 된 ‘宗法制’를 소개하지 않았는데, 이는 설송 선생이 ‘민법이 종법제를 수용한 것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며, 또 창씨개명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것은

80) 구성은 다음과 같다: I. 일반단행본, II. 가족법일반, III. 친족법, IV. 상속법, V. 주요부속법령, VI. 법사회학, VII. 비교가족법, VIII. 구법, IX. 가족법사, X. 여성법률·법률수필, XI. 한국가족법관계 일 본인의 논저 및 조선총독부 간행물, XII. 저자의 논저 및 지도논문.

81) 박병호, 앞의 글, 145쪽.

82) 양창수 교수는 학술대회에서 “자료수집을 위해 매주 몸소 가방을 들고 정부부처를 방문하였다”는 손지열 변호사의 회고를 전해주었다.

83) 『동아일보』 1970.3.13 참조.

84) 李熙鳳, 『서울대학교 法學』 9-2(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67), 210-7쪽.



이에 대한 반발이다. 민법전 편찬 당시에 설송 선생은 호주제폐지를 주장하였고, 평재[이희봉]는 비민주<sup>85)</sup>요소를 제거하는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였다가, 입장을 바꾸었는데, 평재는 설송 선생의 선견지명에 감명하면서, 이 번 저자의 '라이프·와크(life work)'인 本著書에서 韓國家族法과 民主主義에 關한 著者의 卓越한 見解를 表明하여 韓國家族生活의 改革에 對한 方向을 指摘하는 論文이 있지나 않나 하고 期待하면서 冊張을 뒤졌으나 終當 發見하지 못하여 매우 섭섭함을禁치 못하였다. 老齡에도 不拘하고 아직도 研究生活을 繼續하고 있는 著者에게 그러한 論文을 發表해 주기를 이 機會에 付託드리고 싶다.

'第2編 家族法 關係 研究資料'에 대해서는 깊은 감명을 표시하고, “식민지기의 관습은 지배층인 士族의 것이며 또 지방마다 상이한 관습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습의 수집이 요청되고 이는 民俗 또는 사회경제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sup>86)</sup> 그리고 관습의 수집과 해석이 일본인의 慣習觀 또는 일본법에 의거한 해석에 의해 왜곡된 것이 문제이다. 이에 대한 신뢰와 의심은 조선시대의 법전, 선인들의 문헌 등 원 자료에 의해 확인해야 한다.”라고 자료에 대한 사료비판적 연구의 필요성을 표명하였다.

이희봉 선생은 본인이 기대한 것이 없는 것에 대해 서운함을 표시하고 설송 선생이 앞으로도 계속 학술활동을 할 것을 기대하였다. 또 입법자료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특히 판례연구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학자의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위 서평에서도 대가들의 면모를 느낄 수 있다. 이희봉 선생은 민법전 편찬 당시 입장을 달리하였지만 입

85) 원문(213쪽)은 “민주적”이나 “비민주적”의 오식으로 보이기에 수정하였다. 심사에서 이 부분이 오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저자는 … 戶主制度廢置論을 주장하였고, 필자는 법률은 생활의 반영인 한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적 형편으로 소가족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계계승이란 윤리가 執念되어 있으므로 戶主制度存置는 불가피하고 다만 우리의 전래의 가족제도에 내재하고 있는 민주요소를 제거하는 등으로 점진적으로 가족제도의 개혁을 지향하는 민법초안의 입법태도를 대체로 찬동하여 …”

86)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자료의 발굴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지적이 있는 후 40년이 지나서 비로소 본격적이며 기초적인 첫 연구가 나왔다. 이승일, 『일제의 관습조사와 전국적 관습의 확립과정 연구: 《慣習調査報告書》의 편찬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67(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2009) 참조

장을 바꾸면서도 저서의 부족한 점을 비판하면서 앞으로의 연구를 부탁하는 점 등은 현재 학자들의 귀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발간된 지 40년이 지난 후 조미경 선생은 이 저서를 현재 ‘한국가족법의 초석’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남녀평등에 입각한 설송 선생의 사상이 이후 민법개정에 미친 영향을 ① 친족의 범위, ② 금혼범위, ③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도입, ④ 협의이혼의 신고주의 비판, ⑤ 소속불명재산의 夫의 재산 추정, ⑥ 父優先主義 친권제도, ⑦ 여성의 상속법상의 차별” 등으로 소개하고, 가족법 관련자료를 집성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sup>87)</sup>

200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민법의 개정으로 2008년부터 남녀차별의 상징인 호주제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약 60년만에 남녀평등적 친족상속법을 갖게 된 것은 여성계와 학계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설송 선생의 선견지명과 학문적 바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4) 『三·一獨立運動史: 判例를 통해서 본』, 法文社, 1978, 231쪽.

위 저서는 설송 선생이 미국 체류 중에 지병과 싸우면서 집필한 것으로, 동아일보사가 3·1운동 50주년을 기념으로 기획하고 일반을 대상으로 한 『三·一運動 50周年紀念論集』에 수록된 논문 「三·一運動 관계 被檢者에 대한 適用法令」에서 시작한 일련의 논문을 집성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빠진 판결을 『(조선)고등법원판결록』에서 대폭 보충하여, 손병희 선생 등 375명 33건을 수록하였으며, 맺음말에서 지방 및 覆審法院 판결을 비롯한 종합 작업을 부탁하였다.<sup>88)</sup> 전봉덕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3·1독립운동 지사들의 의기와 사상 또 그 선열들의 辛酸枯楚가 극명하게 떠올라 어느 運動史보다

87) 조미경, 「한국의 법학 명저: 정광현, “韓國家族法研究”: 가족법학의 발전과 한국가족법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48-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참조.

88)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1운동(11~20)』, 1990~4년까지 간행하였으며,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next/viewMain.do>)에서는 독립운동판결문을 원문·번역문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笹川紀勝 교수는 오래 동안 1심 판결문까지 수집·정리하였으며, 집중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笹川紀勝, 「法治主義と抵抗の記録—植民地支配と裁判所」, 松田利彦·岡崎まゆみ 編, 『植民地裁判資料の活用: 韓國法院記録保存所所藏・日本統治期朝鮮の民事判決文資料を用いて』(京都: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2015) 참조.

도 깊은 의미를 안겨준다”라고 평하였다.<sup>89)</sup> 설송 선생의 이 연구는 자료수집이 힘든 1970년대에 수행된 선구적인 업적이란 점에 큰 의의가 있다.

(5) 『韓國婚姻法研究』, 서울大學校法學博士學位論文, 1962

법학박사학위논문은 주논문 “韓國婚姻法研究”와 부논문 “신민법과 혼인법”, 부록(1~3)으로 구성되어 있다.<sup>90)</sup> 『경향신문』에서는 “새 박사논문”으로 심사요지를 그대로 소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sup>91)</sup>

본 논문은 한국혼인법의 변천을 규명하고 비교법적 견지에서 현행법에 대한 해석과 입법론적 고찰을 시도한 것으로 주 논문과 부 논문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논문은 “韓國婚姻法研究”로, 서론에서는 이조시대부터 신민법 시행 전까지의 친족상속법의 法源 및 관습법을 규명한 것으로서 이조시대, 日政時代, 해방 당시, 군정시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신민법 시행 전까지로 구분하였다.

특히 일정시대에는 일본 민법 중 일부를 의용하는 외에 대부분 관습법에 의하였는바, 의용법의 누차 개정<sup>92)</sup>으로 말미암아 학계 일반이 법원과 관습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함과 아울러 일정 당시의 관습조사보고서, 사법부장·법무국장 내지 政務總監, 中樞院 의장의 決議·回答, 판례조사회 결의, 조선호적협회 결의, 舊慣制度調査委員會 결의, 조선고등법원 판결 등의 관습법 규범 선언 내지 정립으로서 실정법적 가치가 있음을 주장하고 또 해방을 전후한 과도기에 있어서의 실정법을 규명함으로써 韓國身分法 法源史를 이루었고 본 논문 제1편 제1장은 혼인형태의 사적 고찰을 하고 우리나라 역사상의 婚俗을 고찰함으로써 전근대적 사회에 있어서의 혼인의 목적은 부부 본위가 아니라 조상제시를 위한 남자의 생산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2장 혼인의 성립요건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에 관하여 일일이 법원을 명시하였으며 특히 부녀재혼과 寡居期間에 관한

89) 『法史學研究』 5(한국법사학회, 1979) 수록; 『동아일보』 1979.1.22.에 소개 기사가 실렸다.

90) 당시의 박사학위는 舊制라고 하여 현재와는 달리 기존의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수여하였다.

91) 『경향신문』 1962.8.25. <새 박사논문 ②法博 鄭光鉉>: “한국혼인법 변천을 규명 / 학구생활 30여년간 결정 / 수십년 동안 문헌자료 수집”

92) 「조선민사령」은 1912년 제령으로 제정된 후 1943년까지 17차례 개정되었다.

관습이 없다는 이유로 혼인해소 후 즉시 혼인할 수 있다고 보는 일정 당국의 견해에 대하여 이는 한국민의 혈통혼란을 도모하려는 정책상 견해라 하여 근거를 들어 비판함으로써 과거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관습법임을 주장하고 있다. 제3장 혼인의 효력에서는 비교법학적 입장에서 각국 입법례를 참고하였으며, 제4장은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5장은 혼인해소사유로서의 배우자의 사망과 실종선고를 논하고, 제6장 이혼에 있어서는 특히 재판상의 이혼에 관하여 일정 당시 이래의 지방법원·고등법원의 중요판결을 인용·검토함으로써 이혼실태도 아울러 참고에 [제]공하였다. 제7장 사실혼에서는 우리나라가 형식주의로 전환한 이후 1927년 2월 9일 고등법원 판결이 사실혼에 관한 직접적인 법원임을 밝히고 판례를 주로 하여 사실혼을 구명하였으며, 제8장 약혼에서는 종래 우리나라에는 약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다수설에 대하여 이조시대 定婚에 관한 규범은 근대혼인법정신에 배치되는 규범을 제외하고 관습법규범으로서 실효성이 있었고 또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조리상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평을 加하고 약혼에 관한 관습법을 상술하였다.

특히 법제사적 고찰에 있어서 同姓不婚에 관한 규정이 經國大典에 규정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疑訝를 표명하는 견해에 대하여 대명률은 형법상 보통법으로서 의용되었기 때문에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해명하고 고려율의 제정을 부정하는 견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또 일정 당시의 판례법 및 관습법에 대한 논평 중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한 1920년의 고등법원 판결 및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인용한 1935년의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이는 모두 관습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 판결은 관습을 빙자하여 조리의 요구를 판례법으로 정한 것이라고 논평하고 또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의 취소의 근거를 일본 민법 제785조의 유추적용에 구하는 1922년의 司法協會決議에 대하여 이는 1930년 고등법원 판결에 의하여 인정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일본 민법 제785조의 의용을 전제로 한 司法協會 決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제2편 신민법과 혼인법은 신민법 중 혼인법의 해석과 입법론을 전개한 것으로 제1장 서설에서는 신민법 초안까지의 경과를 논하였는데, 법전편찬위원회의 성립, 張暲根 씨의 친족상속법 要綱私案의 주안점,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건의 및 입법에 의 반영 친족상속법초안의 성립 및 일본국 친족상속법의 개정과 그 요점을 해명하

고 제2장 신 친족상속법의 입법경과와 각종 수정안에서는 국회에 회부되었던 초안의 심사과정 및 법제사범위원회의 입법방침을 기술하고 이에 대하여 헌법준중론에 입각한 저자의 입법론을 전개하고 제1편에 비하여 매우 간략하나 신민법과 상호적 법이 시행되기 전의 신흠인법에 대한 최초의 해석, 비교법적 연구, 입법론적 고찰을 시도한 것이며, 불비한 점은 부논문인 “신친족상속법요론”의 증보판에 의하여 대폭 보충하고 있다.

부록 1, 2, 3은 “일본민법 친족상속법 규정의 의용 여부에 관한 일람표”, “관습상 친족범위표”에 주석을 가한 것으로 매우 훌륭한 자료이다. 부논문 중 「韓國相續慣習法에 대한 立法論的 考察」은 구관습법의 상속에 관한 논문으로서 신민법이 소급주의원칙을 취하고 있으나 상속법에 있어서는 불소급주의를 취하고 있는 관계로 현행법의 이해에 참고되는 바 크며 특히 상속관습법 전반에 걸쳐서 특질을 논하고 일정 당국의 官製慣習을 비판하였으며 종래 불명확한 채로 방치되었던 生前相續를 구명하였다.

이상과 같이 저자는 학구생활 30여년의 결정의 하나로서 혼인에 관한 문헌 특히 구관습법상의 혼인에 관한 자료를 수십 년에 亶(공)하여[펼쳐서] 거의 빠짐없이 수집하여 이를 인용함으로써 구관에 관한 자료가 신민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욱 신일될 우려가 있는 이때에 문헌자료의 수집·정리 및 내용의 천명에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교법적으로 또는 비교법제사적으로 연구·논급함으로써 우리나라 혼인법사를 이룩하였으며 신민법의 입법사 및 최초의 해석론·입법론을 시도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다만 최근 수년간의 사정의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고 또 논문의 이론적 체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의 창의성의 발휘가 부족한 점은 있으나 한국혼인법사의 大綱을 밝힐 수 있었음은 저자의 斯界에 대한 독창적 학문의 체계를 증명하며 신민법 제정 당시에는 친족상속법의 입법에 관한 허다한 논문 및 수정안을 제출함으로써 입법에 참여하는 등의 공헌이 크므로 법학박사학위를 수여함이 충분하다고 인정한다[분량 2,231자, 14.4매].

1962년 5월 16일 주심: 高秉國(1909~1976), 부심: 金曾漢(1920~1988), 위원: 劉基天(1915~1998), 方順元(1914~2004), 田鳳德(1910~1998).

설송 선생은 박사학위취득에 대해 “친족상속법연구”의 일부로 본격적인 집필은 8년 전부터이었으나 관심은 동경제국대학 재학시절부터 있었다. 이 논문을 쓰기 위해 술도 끊고 잠도 줄여 가면서 정성을 기울였다. 학위취득일에 정년을 하게 되는데, “연구실을 잃게 될 학위가 그리 달가운 것이 못 된다”라고 하여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것을 서운해 하였다.<sup>93)</sup>

이때 『경향신문』에서는 한국사 金庠基(문학), 정치학 閔丙台(문학), 국어학 金亨奎(문학), 경제학 崔文煥(경제학; 제10대 서울대학교 총장[1966.11.11.~1970.11.10]) 등 다섯 분의 박사학위논문을 소개하였다(1962.8.24~28). 이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로, 설송 선생이 이들과 함께 거론되어 법학계만이 아니라 한국의 인문사회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로 인정을 받았다.

(6) 「韓國相續慣習法에 대한 立法論的 考察」, 『論文集: 人文社會科學』 5, 서울大學校 研究委員會, 1957(76쪽)

이는 본문 44쪽, 부록 32쪽 총 76쪽(4·6배판)으로 200자 원고지 약 500매에 해당하는 저서에 버금가는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정부초안과 국회수정안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선 원안은 현행법[식민지기에 확립된 관습법]을 성문화하여 血統主義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수정안은 이를 어느 정도 완화하였고, 이에 대해 찬반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각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특이한 사례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특질에 대한 찬반논쟁에 대비하여 현행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외국입법례를 제공하기 위해 집필한 것이다. 이 논문은 주로 재산상속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여 제1절에서는 한국상속법의 특질을 법원과 내용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제2절에서는 상속개시원인과 상속인에 대해 검토하였다. 부록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 친족편·상속편 심의요강 심의록”을 수록하였다. 後記에서 한국상속법의 입법론적 고찰의 근본문제인 戶主制度와 戶主相續制度에 대해 검토하지 못하였고 후일 집필을 기약하였으나, 본격적인 집필에는 이르지 못

93) 『경향신문』 1962.8.25. <정년만 아니면 더 연구해 발표>.

하였다.

첫 저서인 『姓氏論考』는 비록 강압적 분위기에서 집필되었지만, 식민지 말기의 혼인·양자·상속에 관한 현행법을 개설하고 해석상 문제점을 해명하였으며, 또한 가족법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한국인 최초로 ‘가족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sup>94)</sup> 그리고 교과서들은 당시에는 권위 있는 해설서<sup>95)</sup>로 통용되었으며, 현재에는 민법전 편찬 당시의 사정과 해석론을 알려주는 귀중한 성과이다. 그리고 『韓國家族法研究』, 『三·一獨立運動史』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 없을 것이다.

#### IV. 학문의 자세

설송 선생은 철저한 실정법학자로 학문에서 엄정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박병호 선생이 전공을 가족법에서 한국법제사로 바꿀 때의 일화에 잘 드러난다. 박병호 선생은 가족법 석시논문을 거의 다 완성했을 때, 갑자기 한국법제사로 전공을 바꾸라는 엄명을 받았다. 박병호 선생은 설송 선생의 엄명을 바꾸려고 하였지만 요지부동이었다. 게다가 논문주제는 가족법이 아닌 전혀 새로운 분야로 정하라고까지 하였다. 결국 설송 선생의 엄명에 따라 부동산담보법으로 논문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설송 선생은 논문초고를 일일이 문구, 문장의 앞뒤 순서까지 바꾸는 등 철저하게 지도하였다.<sup>96)</sup>

설송 선생은 논문을 집필할 때 엄격성을 강조하였다. 절대로 남의 학설을 당신의 학설로 하지 않았고 남의 글을 도용하는 것에는 아주 엄격하였으며

94) 박병호, 앞의 글, 141쪽.

95) 이회봉, 앞의 서평, 211쪽. 1955년 전의 교과서는 “金安鎮, 『民法(5)』, 朝文社, 1950”가 있고 “李熙鳳, 『親族相續法研究』, 日新社, 1957”, “金疇洙·金容漢, 『新親族相續法』, 博英社, 1960”가 이어서 간행되었다.

96) 편집부, 「박병호 교수의 걸어오신 길」, 『서울대학교 법학』 32-1·2(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 li-ii쪽.

다른 사람에게도 철저하였다.<sup>97)</sup> 이는 그의 삶의 궤적과 같다. 이러한 입장은 제자들의 논문지도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논문지도는 엄격하여 “대쪽 같이 정직한 선생님은 제자 가운데 혹 남의 글을 허술히 표절한 경우에는 화를 내시어 준엄하게 꾸짖고 그 논문을 찢어 던져버리시는가 하면 스스로 제자의 글 한 줄이라도 인용할 경우에는, 참 송구스러울 정도로 그 출전색인을 정확히 밝혀 우리에게 학문의 도를 시범해주신 분이다.”<sup>98)</sup> 영산 박병호 선생은 “아주 엄격하셔서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고생을 아주 많이 하셨다고 회고를 하였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는 따뜻하셔서 일을 마치고 나면 당신이 가진 당시로는 구하기 힘든 귀한 책들을 선물로 주셨다”<sup>99)</sup>고 한다.

그러나 학문적 엄격함과 달리 인간관계는 너그러웠다. 저서의 서문에는 도와준 이들을 일일이 기록하여 감사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대립하는 인물도 품었다. 기세훈 변호사<sup>100)</sup>는 호주제의 준치를 완강히 주장하였지만, 『韓國家族法研究』의 집필을 도왔으며, 교류한 인물은 학계만이 아니라 실무계 인사 그리고 사회학자와 역사학자까지 두루 포괄하고 있다. 또한 학자양성에도 적극적이어서 1953~1969년 서울대와 타교를 가리지 않고 21명의 석사와 2명의 박사를 배출하였는데, 단 2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족상속법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송 선생의 학문의 자세는 이론과 실천이 합일되었다는 점이다. 민주적 친족상속법을 만들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노력하였지만, 시대분위기로 달성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나마 획득한 입법의 결과를 사회에 실현하기 위해 여성계몽운동에 헌신하였다. 식민지기부터 계속된 이러한 활동은 서울대 교수 재직 때에는 대중강연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애제자인 이태영 선생이 1956년에 설립한 가정법률상담소를 적극적으로 후원한 것도 이러한 계몽운

97) 심희기 대담, 「영산 박병호 교수의 법사학 세계」, 『법과 사회』 14(창작과 비평사, 1997), 162-3쪽.

98) 이태영, 앞의 글, 210쪽.

99) 영산 선생께서 평소에 들려주신 이야기이다.

100) 기세훈 변호사는 1977년에 호주제폐지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으며(『경향신문』, 1977.11.8), 1984년 2월에는 성균관 부관장으로 정부의 가족법개정계획에 대해 전통의 파괴와 법질서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하였다(『동아일보』, 1984.2.2).



동의 일환이었다.

설송 선생은 이화여전에 재학 중인 이태영 선생을 발굴하여 법학으로 이끌고 공부를 격려했다. 이태영 선생이 1943년에 남편(정일형) 옥바라지를 하느라고 이불장사를 하다가 신촌에서 설송 선생을 만났는데, “태영이도 별 수 없군. 법률공부는 집어친 것이야!”라고 하여 한편으로는 꾸짖으면서 격려를 하였는데, 그 날 이태영 선생은 서럽고 서운해서 밤새 울었다. 해방 후 서울대가 남녀공학이 되자 아이 넷인 주부를 학생으로 받아주고 석사·박사 학위까지 지도하였고, 부산 피난 시절에는 고등고시를 치라고 성화하였고 그래서 한국 최초의 여성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sup>101)</sup> 이태영 선생이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장일 때에는 강의로 도와주었고, 1956년 가정법률상담소를 설립할 때<sup>102)</sup> 作名까지 해주고 그 후 10년 동안 매주 자문을 하였다.<sup>103)</sup> 이처럼 설송 선생과 이태영 그리고 가정법률상담소는 한 몸으로 한국가족의 민주화를 실현하였다.

## V. 맺음말

설송 선생은 1902년 국권이 위태로울 때에 태어나서 비교적 개명한 집안 분위기 덕분에 동경제국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였다. 귀국 후에는 연희전문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면서 친족상속법에 대한 연구와 함께 여성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계몽활동을 하였다. 1938년 사상문제로 연희전문학교에서 사직한 후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친족상속 관습을 연구하였다. 1950년부터 서울대학교에 재직하면서 본격적으로 친족법을 연구하였고, 남녀평등에 입각한 민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하였다. 민법 제정 후에는 가정법원의 설립, 가사심판법의 제정 등에 관여하여 실질적으로 남녀평등을 구현하려고 노

101) 이태영은 판사를 지망하였으나, 정일형이 야당의원이라는 이유로 임용되지 않았다.

102) 1956년 8월에 여성문제연구원 부설 ‘여성법률상담소’로 창립하였으며, 1966년 8월 개칭하였다.

103) 이태영, 앞의 글, 208-210쪽.

력하였다.

설송 선생은 학문의 기반인 도서관과 저작권에도 관심을 가졌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장으로 재직하면서 도서관이 인적·물적으로 자리를 잡는데 큰 기여를 하였고, 이 때 한국법제사와 고문서학의 초석이 되는 규장각 소장 고문서의 정리를 하였다. 또 지식의 보고인 도서관의 중요성을 일깨워 한국 사회에 도서관이 뿌리내리는 데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더 넓고 튼튼한 학문의 바탕을 만들기 위해 저작자를 우선하는 저작권의 도입을 주장하였고, 저작권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제 우리는 설송 선생의 글로 그의 체취를 느낄 수 있을 뿐이다. 설송 선생의 업적과 학문의 자세는 필자의 은사이며 제자인 영산 박병호 선생의 추모글에 그 고갱이가 잘 드러나 있어 그대로 소개한다.

雪松 鄭光鉉 선생은 한국가족법 근대화의 선구자이며 한국가족법의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저서와 논문은 한국가족법의 고전임과 동시에 또한 살아 있는 현행법이다. 선생이 1950년대에 앞장섰던 가족법 근대화 주장은 1989년에 이르러 그런대로 성취되었으니 선생의 학문적 빛은 근 반세기의 역정을 거쳐 밝아지기 시작하였다. 선생의 저서와 입론은 오늘날 후학들이 다시 반추하여야 한다. 선생은 교수 및 학자로서 도서관장 외에는 일체의 보직을 맡지 않으시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으며, 제자들에게는 교수로서는 도서관장직만을 맡을 것이며 그것은 학문의 밑거름으로서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평소에 말씀하셨다. 바둑, 장기는 물론 일체의 잡기를 할 줄 모르시고 취미다운 취미도 없이 오로지 학문연구에만 전념한 순수·순박한 학자로서 그 시대에 맡겨진 소명을 완수하셨다. 후학들에게 학문세계에서의 시대의 進運을 깨우쳐 주시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학문의 표절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시고 천하에 드문 학문적 고집으로 일관한 雪松 선생은 우리나라 법학계의 영원한 스승으로 기억되어야 하리라 믿는다(앞의 책, 146쪽).

설송 선생은 가부장적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남녀평등에 눈을

뒀고 핵심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는 상아탑에서 학문적 성취에만 만족하지 않고 소신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계몽활동을 하였으며 그 대미는 가정법률상담소의 후원이었다. 또 형식적 법조문에만 얽매이지 않고 법의 역사성·사회성을 강조하였다. 제자는 물론 본인에게도 또 학문적 엄정성을 강조하였다. 설송 선생은 일평생 학자의 길을 걸으면서 오로지 한 우물만을 팠고 또 그의 이상에 사회에 실현되도록 노력하였다. 그의 학문과 삶의 자세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자들의 사표이며, 미래 학자들의 理想이다.

## 부록

## 1. 雪松 鄭光鉉 先生 年譜\*

1902. 5. 3. 延日 丹一 鄭在命(1861.4.27)의 3男, 平壤府 履鄉里 출생[陰]
1906. 7. 2. 母 全州李氏 서거[陰]
1907. 8. 父 晋州金氏와 재혼[陰]
1909. 4. 1. 평양 四崇學校(嚴親 설립) 입학
1910. 4. 1. 평양 私立崇德學校 입학
1912. 4. 1. 평양 第一公立普通學校 입학(1916.3. 졸업)
1916. 4. 1. 평양 官立高等普通學校 입학(1919.3. 3학년 수료)
1919. 6. 동교 4학년 재학중(3·1 운동 당시) 日本國 東京 유학
1919. 6. 日本 東京正則英語 豫備學校 및 研修學館 수학(10개월)
1920. 4. 日本 私立 明治學院 중학부 제4학년 편입(1921.3. 수료)
1921. 4. 日本 早稻田 第一高等學院 理科에 입학하여 第1學期 재학
1922. 4. 日本 岡山 第六高等學校 文科 甲類 입학(1925.3. 졸업)
1925. 4. 日本 東京帝國大學 법학부 법률학과(英法科) 입학(1928.3. 졸업(법학사))
1928. 4. 東京帝國大學 경제학부 경제학과에 학사편입하여 제1학기 재학.
1928. 9. 평양 송실전문학교 문과교원(~1929.3;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법학통론 담당)
1929. 3.12. 佐翁 尹致昊 3녀 文姬와 결혼(서울 YMCA 결혼식 거행, 당일 결혼신고)
1930. 4. 연희전문학교 교원(9년간 민법, 상법, 법학통론 담당)
1930. 4. 이화여자전문학교 강사(~1938.5.; 9년간 법제경제 담당)
1930. 4. 貞信女學校 강사(2년간 법제경제 담당)
1931. 4.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강사(8년 법제경제 담당)
1938. 5.12. 배일사상사건(興業俱樂部 사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피검

\* 「鄭光鉉博士 年譜 및 著書論文 目錄」, 『서울대학교 법학』 4-1·2(서울대 법학연구소, 1962) 및 저자의 『韓國家族法研究』 수록 「저자 연보」에 의거하여 필자가 보충하였다. 논저에 대한 보완조사를 한 이승현(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군에게 감사하며 오류는 필자의 책임이다.

- 12월 기소유예처분으로 석방(190일간 서대문경찰서 구치)
- 1938.12. 연희전문학교 교원 면직
1939. 1. 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에 의하여 사상전향기관 大和塾에서 수개월간 강제 수련
1941. 5. 2. 연희전문학교 서무과장(~1942.12.31)
1944. 4.10. 조선총독부 중추원 舊慣制度調査課 명예촉탁 피촉, 친족상속관습 조사연구 해방 후 법무부로 이관, 근무
1946. 4. 1. 미군정청 법무부 법무관 근무(~10.20; 군정법령 사무 담당)
- 1946.10. 7. 미군정청 중앙관재처 차장(~1948.7.31; 귀속재산관계법령·예규 기초 담당)
1947. 2. 2. 父親 逝去[陰]
1949. 3. 귀속재산정리위원회 위원
1949. 4. 三和義塾 숙장 취임(1학기)
- 1949.10.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친족상속법)
1950. 1.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친족상속법, 민법총칙, 영미법 등)
1951. 4. 서울대학교 대학원 강사(신분법사, 신분법연구, 비교신분법 등)
1951. 4.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강사(2년;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1951. 4.26. 법무부장관의 변호사자격의 인가<sup>1)</sup>
1951. 4.26. 변호사명부등록(등록번호 제517호)
1951. 5. 서울대학교 대학원 위원 피촉(2년)
1951. 6. 대한민국 법전편찬위원회 위원(~1962; 11년 재임)
1952. 9. 1. 서울지방법원 인사조정위원(~1954)
1952. 4.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도서관장 겸보
1952. 9. 5.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장직 겸보(~1962.5.11; 10년 재임)
1953. 3. 교통부 관리국 법률고문(~1957; 4년)
1953. 4. 서울대학교 대학원 민사법전공주임(3년)
1953. 4.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강사<sup>2)</sup>

1) 「변호사법」[63; 1949.11.7. 제정 시행]. 부칙 제2항, 過渡政府法令 제207호 제2조 나항 5호 후단 의거.

- 1953. 9. 9. 중앙법률연구소 창립(김병관 변호사 사무실) 및 연구위원
- 1955. 4.16.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이사
- 1956. 3.12. 한미재단의 교수연구비(AFK Faculty Research) 수여
- 1956. 4.20.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회장(2년 재임)
- 1956. 9.10. 서울대학교 연구위원회 위원
- 1956. 9.21. 서울대학교 개교10주년기념 고도서전시준비위원회 위원장
- 1957. 5.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구비 수여
- 1957. 5.21. 국민독서연맹 이사
- 1957.10.10. 서울대학교 대학원 위원(~1959.2)
- 1958. 7. 7.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고문
- 1959. 3.1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위원회 위원(~1961.1.24)
- 1960. 7.14. 문교부 저작권심의위원회 위원(~1964.7.28)
- 1960. 7.28. 서울대학교 인쇄공장 운영위원회 위원
- 1960.10.20. 문교부 해외선전도서 선정위원회 위원
- 1960.12. 5. 서울대학교 직무인사위원회 위원(~1962.5.1)
- 1961. 4.23.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평의원
- 1961. 7. 3. 서울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심의위원회 위원(~1962.5.1)
- 1961. 8. 1. 사단법인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사(~1962.11.5)
- 1961.11.30.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법학박사학위논문 제출
- 1962. 3. 6. 동경국제도서전시회 출판도서 선정위원
- 1962. 3.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호적제도연구위원 피촉
- 1962. 4. 1.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위원회 위원
- 1962. 4.23. 박사학위청구자로 외국어(영·독) 고사 응시
- 1962. 5.16. 법학박사학위논문 「韓國婚姻法研究」 심사위원회 통과
- 1962. 6. 4. 법과대학 및 가족 공동주체로 회갑 축하연 거행[陰 5.3]
- 1962. 8.15.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으로부터 黃條素星 훈장을 받음

---

2) 단국대학교(1958), 성균관대학교·한양대학교(1959), 건국대학교(1960), 연세대학교(1962) 강사.

- 1962. 8.30.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취득
- 1962. 8.31. 서울대학교 교수 정년퇴직<sup>3)</sup>
- 1962. 9.24. 서울대학교 名譽教授 추대
- 1963. 3. 6. 家庭法院法<sup>4)</sup> 기초위원 피명
- 1963.10. 1. 서울가정법원조정위원 피명
- 1963.12.19. 제2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위원 피촉
- 1964. 5. 5. 가족법연구회 회장
- 1965.11. 가족법연구회 명예회장
- 1966. 4.23.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선임
- 1966. 5.1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재임명(정년 65세 연장)
- 1966. 7.17. 대한민국 학술원 제11회 공로상 수상
- 1966. 9.2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주임(~1967.8.31)
- 1966.11. 4. 서울대학교 대학원 위원(~1967.8.31)
- 1967. 7.16.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 1967. 8.31. 서울대학교 교수직 정년퇴직
- 1967. 9. 1.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추대
- 1967. 9.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사법대학원에서 강의
- 1971.11.26. 고혈압 치료를 위해 미국 이민
- 1980.12. 7. 미국 메릴랜드대학 부속병원에서 서거
- 1981. 2.19.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추도식 거행

## 2. 논저 목록

### 가. 單行本(10권)

- 『姓氏論考：朝鮮家族法論考』, 東光堂書店, 1940(238쪽)<sup>5)</sup>
- 『敵産關係法規 並 手續便覽』, 東光堂版, 1948(208쪽)

3)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708; 1961.9.1)」 제15조에서 停年을 60세로 정하였다.

4) 「가사심판법」[1375; 1963.7.31. 제정, 10.1. 시행]으로 보인다.

5) 출판지는 모두 서울이므로 생략하며, 출판연도는 서기로 통일한다.

- 『(韓國)親族相續法講義[上卷]』, 葦聲文化社, 1955[1957 재판](376쪽)
- 『新親族相續法要論』, 葦聲文化社, 1958[1959 재판](467쪽)
- 『新親族相續法要論』, 修正增補版: 法文社, 1961(605쪽)
- 『韓國婚姻法研究』, 서울大學校法學博士學位論文, 1962(318쪽)
- 『新民法大意(下)』, 博文社, 1962[공저자: 金疇洙·金容漢](310쪽)
- 『韓國家族法研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1967(총 1,519쪽)
- 〈서평〉 李熙鳳 評, 『서울대 法學』 9-2, 서울대학교 法學研究所, 1967
- 〈서평〉 조미경 評, 「가족법학의 발전과 “한국가족법연구”」, 『서울대 法學』 48-3, 2007
- 『三·一獨立運動史: 判例를 통해서 본』, 法文社, 1978(232쪽)
- 〈서평〉 田鳳德 評, 『法史學研究』 5, 한국법사학회, 1979
- 『親族相續編, 朝鮮民事令 및 戶籍法の 編註』, 『正陽六法全書』, 正陽社, 1960, 1961(편찬위원)<sup>6)</sup>

## 나. 論文(136편)<sup>7)</sup>

### (1) 민법(110편)

- 「朝鮮의 現行法令概觀」, 『延專타임즈』 1934.5.1◆
- 「女性의 法律(30)<sup>8)</sup>」, 『朝鮮中央日報』 1934.11.16~1935.1.20
- 「朝鮮女性의 法律上 地位」, 『梨花』 4-5, 1935.10◆
- 「朝鮮女性과 法律(10)」, 『東亞日報』, 1936.4.1~25
- 「朝鮮女性의<sup>9)</sup> 貞操蹂躪과 慰藉料」, 『女性』, 조선일보사 출판부, 3-2, 1938.2
- 「朝鮮民事令改正을 中心으로(4)」, 『朝鮮日報』 1939.11.17~21
- 「朝鮮女性과 氏制度」, 『女性』 5-1, 1940.1
- 「改正朝鮮民事令의 全般的 解說」, 『朝光』 6-2, 조광사, 1940

6) 본 법전은 관련 법령 및 조문 등을 제시하였다(범례 참조). 따라서 이는 법령을 편집한 것을 넘어선 학문적 노고가 투입된 연구서에 준하는 것이다.

7) 현재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논문은 “◆”를 표시하였으며, 민법 11편, 도서관·기타 각 11편이다. 민법 논문은 『韓國家族法研究』에 대부분 수록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치밀한 대조가 필요하다.

8) 연재물은 전체 회수, 일간신문은 발행일자만, 대학신문 등은 호수까지 표기한다.

9) 원래 발표문에는 “朝鮮女性의”가 없다.



- 「喪祭에 對한 再吟味: 朝鮮祭祀相續法論<sup>10)</sup>을 읽고」, 『朝鮮日報』 1940.2.24~25◆
- 「朝鮮法典考」, 『朝鮮日報』 1940.7.31
- 「朝鮮女性의 法律上 地位」, 『春秋』 2-4, 조선춘추사, 1941.5
- 「韓國養子法草案概評」, 『法大學報』 1,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1954.6
- 「民法總則(開講辭)」, 『地方行政』 3-1~2,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54.1~2
- 「親族相續法の 改定點에 對한 管見(2)」, 『大學新聞』 1955.5.12, 5.19◆
- 「韓國의 生前相續(2)」, 『法曹協會雜誌』 4-3~5·6, 法曹協會, 1955.7, 1955.10
- 「胎兒와 未成年者의 法律講話」, 『法大學報』 3-1, 1956.7
- 「立法의 民主化: 親族相續法草案을 中心으로」, 『大學新聞』 127, 1955.10.17
- 「英法의 法源과 裁判所」(譯註), 『法曹協會雜誌』 4-7, 1955.11
- 「日本民法第七十七條는 依用되는가」, 『大學新聞』 163, 1956.10.22
- 「民事判決(大法院判例)에 對한 異議」, 『考試와 詮衡』 4-8, 고시와 전형 학회, 1956.11
- 「親族相續法草案批判(2)」, 『大學新聞』 165·167, 1956.11.5·19
- 「新民法의 重要點과 所感: 親族相續法을 中心으로」, 『議會政治』 1, 1956.12◆
- 「親族相續編의 要綱 및 草案에 對한 分析과 管見(3)」, 『法政』 12-3, 6, 11 法政社, 1957.3, 6, 11
- 「親族相續法案에 對한 檢討」, 『法政』 12-11, 1957.11
- 「韓國相續慣習法에 對한 立法論的 考察」, 『論文集: 人文社會科學』 5, 서울대학교 研究委員會, 1957.4
- 「親族相續編의 要綱 및 草案에 對한 分析과 管見」, 『法政』 12-6, 1957.6
- 「親族相續法制定의 目的과 立法方針에 對한 管見」, 『大學新聞』 179, 1957.4.15
- 「民法案中修正案에 對한 檢討: 親族相續編을 中心으로」, 『大學新聞』 198, 1957.10.14
- 「民法案中親族相續編修正案理由書」, 鄭一亨議員 提出 1957.11
- 「民法案(親族相續編)修正提議」, 『大學新聞』 204, 1957.11.25
- 「韓國의 親族範圍」, 『코메트』 31, 공군본부 정훈감실, 1957.12
- 「養戶主의 罷養禁止問題: 法司委修正案의 養戶主罷養禁止規定은 不當」, 『法律新聞』

10) 野村調太郎, 『朝鮮祭祀相續 序說』(朝鮮總督府 中樞院, 1939).

277, 1957.12.16

- 「新親族相續法에 대한 管見」, 『법제월보』 1-1, 법제처, 1958.1
- 「相續人の 順位와 相續分: 정부안·수정안 및 현행법의 비교」, 『現代』 2-1, 女苑社, 1958.1
- 「庶子女의 民法上의 地位」, 『考試界』 3-1, 국가고시학회, 1958.1◆
- 「新親族法解說(2)」, 『法制』 2-1~2, 1958.1~2
- 「新民法의 同姓同本結婚을 밝힌다」, 『夫婦生活』 2-2, 부부생활사, 1958.2◆
- 「新相續法解說(3)」, 『法政』 13-2, 3, 7, 1958.2~3·7
- 「養子制度의 目的과 各國의 近代의 養子法概觀」, 『法律과 經濟』 1-3, 1958◆
- 「英國家族法概要」, 『法曹』 8-3, 법조협회, 1959.3
- 「新舊民法中 親族相續編의 差異點: 新民法에 對한 解說과 批判」, 『法政』 14-12, 1959.12
- 「相續法(新舊相續法의 比較)」, 『大學新聞』 282, 1960.2.22
- 「어떤 사람과 結婚할 수 없는가: 새 民法과 女性의 權利」, 『女苑』 6, 女苑社, 1960.1
- 「同姓同本者間의 禁婚規定을 中心으로」, 『法政』 15-3, 1960.3
- 「離婚에 對하여」, 『生活法律全書』, 學園社, 1960.7
- 「壻養子婚姻과 入夫婚姻」, 『法政』 16-5, 1961.5
- 「親族相續法中 解釋上 問題點(2)」, 『法曹』 10-6~7, 1961.6~7
- 「戶籍法 解說(8)」, 『司法行政』 1-2~3, 3-1~2·3, 5, 7~9, 韓國司法行政學會, 1960.2, 1962.2~9
- 「身分權의 濫用: 身分法의 基本問題」, 『考試界』 7-1, 國家考試學會, 1962.1
- 「日本民法의 一部改正(2)」, 『大學新聞』 419·421, 1962.7.2·9
- 「約婚과 破婚의 조건」, 『美의 生活』 1, 미의 생활사, 1962.8
- 「혼인의 條件」, 『美의 生活』 2, 미의 생활사, 1962.9
- 「裁判에 依한 婚姻申告와 協議離婚意思의 確認」, 『法政』 18-10, 1963.10
- 「婚姻申告의 強制履行을 裁判上 請求할 수 없는가」, 『法律新聞』 534, 1963.5.27
- 「婚姻申告의 強制履行問題: 法官·辯護士諸公에게」, 『法政』 18-6, 1963.6
- 「事實婚夫婦에게 婚姻申告權을 認定할 수 없는가」, 『法律新聞』 535, 1963.6.3

- 「婚姻申告履行請求와 事實婚確認請求問題」, 『大學新聞』 485, 1963.6.17
- 「懸賞小說 賞金과 稅金의 問題」, 『東亞日報』 1963.9.2
- 「家庭法院과 家事審判法」, 『Fides』 10-3,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1963
- 「家庭法院과 家事審判」, 『大學新聞』 502, 1963.9.30
- 「小說懸賞金の 課稅에 대한 見解」, 『韓國日報』, 1963.10.17
- 「教育에 關한 特例法은 不當(2)」, 『東亞日報』, 1963.10.24~25
- 「法定分家와 一家創立」, 『法制月報』 5-5, 法制處, 1963.5
- 「家事審判法과 戶籍法中改正法律의 概說」, 『法制月報』 5-8, 1963.8
- 「協議離婚無效確認 및 扶養料請求事件」, 『法曹』 12-11·12, 1963.12
- 「〈身分法判例研究〉 虐待·侮辱을 原因으로 한 離婚請求事件」, 『서울대 法學』 5-1·2, 1963
- 「事實婚保護問題」, 『法政』 18-7, 1963.7
- 「事實婚保護의 強化論」, 『法政』 19-2, 1964.2
- 「妻弟와 兄夫間의 婚姻問題」, 『法政』 19-5, 1964.5
- 「兄夫와 婚姻할 수 없는가」, 『梨大學報』 204, 1964.5.18
- 「無效婚과 戶籍訂正」, 『法政』 19-6, 1964.6
- 「親族相續法雜題」, 『法制月報』 6-6, 1964..
- 「親族의 範圍와 種別에 關한 問題(2)」, 『法制月報』 6-7~8, 1964.7~8
- 「戶主·家族에 關한 問題」, 『法制月報』, 6-9, 1964.9
- 「婚姻法에 關한 問題(2)」, 『法制月報』 6-10~11, 1964.10~11
- 「相續法에 關한 問題」, 『法制月報』 6-12, 1964.12
- 「事實婚保護의 現狀과 그 強化論」, 『서울대 法學』 6-2, 1964
- 「親族의 範圍와 種別에 關한 問題」, 『法制月報』 6-8, 1964.8
- 「〈判例研究〉 結婚前의 不正行爲에 關한 審判」, 『法曹』 14-7, 1965.7
- 「同姓同本人 者와 婚姻할 수 없는가」, 『梨大學報』 229, 1965.4.5
- 「死後婚姻申告問題」(12), 『法政新聞』 560~571, 1965.5.22~9.15
- 「〈判例解釋〉 事實婚解消로 因한 損害賠償請求事件: 世稱 婚姻前의 不貞行爲도 離婚原因이 될 수 있다」, 『Fides』 12-1, 1965

- 「民法第九條· 第八百十七條의 解釋問題」, 『法制月報』 7-9, 1965.9
- 「事實上 離婚한 妻에 對한 離婚請求認容事件을 中心으로: 金疇洙教授의 反論<sup>11)</sup>에 答한다」, 『法典月報』 17, 玄岩社, 1965.12
- 「現行司法試驗施行上의 諸問題」, 『法制月報』 7-6, 1965.6
- 「〈判例解釋〉 事實上 離婚한 妻에 對한 離婚請求認容 事件」, 『法典月報』 14, 1965.9
- 「司法官과 親族相續法」, 『法典月報』 9, 1965.4
- 「婚姻申告는 왜 하여야 하는가」, 『梨大學報』 243, 1965.9.6
- 「金疇洙教授의 身分法判例研究<sup>12)</sup>에 對한 異議」, 『法政』 20-12, 1965.12
- 「同姓同本인 男女도 結婚할 수 있다」, 『女苑』 통권 123, 1965.12
- 「權利濫用禁止의 原則: 身分法을 中心으로」, 『司法行政』 7-9, 1966.9
- 「事實上婚姻關係存否確認 請求問題」, 『서울대 法學』 8-2, 1966.12
- 「妻弟와 兄夫間의 婚姻可否論」, 『서울대 論文集: 人文社會科學』 12, 1966.10
- 「妻弟와 兄夫間의 婚姻問題(10)」, 『法律新聞』 655~8, 660~5, 1965.12.13~1966.2.28
- 「離婚과 慰藉料」, 『主婦生活』 11, 1966◆
- 「女性과 財産相續」, 『女苑』 통권 135, 1966.11
- 「同姓同本者의 婚姻의 限界」, 『朝鮮日報』, 1966.11◆
- 「司法試驗制度 研究委員會案에 對한 管見」, 『司法行政』 12, 1966◆
- 「親族相續關係 慣習調查資料選: 民事慣習回答彙集의 續篇」, 『法制月報』 8-12, 1966.12
- 「南陽洪氏중 唐洪과 土洪간의 婚姻可否論: 法院行政處長의 質疑回答에 對한 異議와 要望」, 『司法行政』 8-5, 1967.5
- 「子婦의 財産相續人中에는 媳父母가 包含된다는 見解의 不當論」, 『法律新聞』 723, 1967.5.8
- 「夫의 遺産에 對한 遺妻의 代襲相續權」, 『法律新聞』 724, 1967.5.15
- 「相續權缺格事由와 解釋上問題點: 民法 第877條中의 同姓同本의 意味」, 『法律新聞』 725, 1967.5.22

11) 金疇洙,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 『司法行政』 6-11(1965.11) 참조.

12) 金疇洙, 「事實婚解消의 正當事由로서의 結婚前의 男女關係에 基因한 家庭破綻」, 『法曹』 14-9·10(1966.10) 참조.

- 「日政末期의 宦官의 異姓養子의 相續權에 관한 大法院見解의 檢討」, 『法律新聞』 726, 1967.6.5
- 「舊慣習法上의 出家女息의 財産相續權의 變遷과 民法1009條2項中の ‘同一한 戶籍內에 있는 女子’의 解釋」, 『法律新聞』 727, 1967.6.12
- 「舊慣習法上의 相續人의 順位와 現行民法上에 相續人의 順位」, 『法律新聞』 728, 1967.6.19
- 「舊慣習法上의 子婦의 戶主相續順位에 관한 李漢奎氏의 見解<sup>13)</sup>에 대한 異議」, 『法律新聞』 732, 1967.7
- 「韓國親族相續關係 慣習調查 資料選」, 『法制月報』 9-1~2, 1967.1~2
- 「婚姻外 出生子의 生母의 親權者 또는 後見人의 適格問題」, 『法曹』 19-9, 1970.9
- 「現行法上의 財産相續人의 範圍」, 『法曹』 19-11, 1970.11

(2) 저작권법(8편)

- 「著作權問題」, 『人文評論』 2-5, 인문사, 1940.5
- 「著作權法의 立法과 行使問題」, 『大學新聞』 52, 1953.6.22
- 「出版物臨時團束法案檢討」, 『大學新聞』 101, 1955.2.14
- 「著作權法과 우리의 要請」, 『大學新聞』 137, 1956.2.13
- 「著作權法案의 批判(5)」, 『朝鮮日報』 10323~10327, 1956.2.10~14
- 「著作權法案의 再批判(4)」, 『東亞日報』 10220~10223, 1956.3.27~30
- 「新著作權法의 概說: 著作者의 權利를 中心으로」, 『大學新聞』 174, 1957.2.25
- 「著作權法上의 問題點-「安本」著述의 邦譯의 境遇」, 『大學新聞』 246, 1959.2.9

(3) 도서관 관계(12편)

- 「圖書館改館에 際하여」, 『大學新聞』 63, 1953.11.30
- 「보dana은 책의 效用」, 『東亞日報』 9751, 1954.11.14
- 「圖書館의 利用」, 『大學新聞』 108, 1955.4.18

13) 李漢奎, 「호주상속 등에 관한 실례」, 『法政』 22-7(1967.7) 참조.

- 「古書와 文書: 전시회 개최에 즈음하여」, 『朝鮮日報』 10573, 1956.10.17
- 「讀書의 大衆化運動」, 『서울신문』 17368, 1956.11.23
- 「圖書館擴充의 緊要性」, 『서울신문』 17598, 1957.7.12
- 「서울大圖書館의 危機」, 『大學新聞』 236, 1958.10.20
- 「奎章閣圖書와 서울大學校(2)」, 『조선일보』 11639~11640, 1959.9.20~21
- 「圖書館을 많이 利用하라」, 『大學新聞』 286, 1960.4.4
- 「韓國圖書館의 實態」, 『새세대(文理大)』 19, 1960.11.5◆
- 「新入生の 圖書館利用(2)」, 『大學新聞』 386,7, 1962.3.8, 12
- 「雲樵(張之兌)先生을 哀悼함」, 『大學新聞』 405, 1962.5.14

#### (4) 기타(6편)

- 「法律的 經緯(2)」, 『青年』 11-8~9, 중앙YMCA, 1931.8~9
- 「防諜과 國防保安法」, 『新時代』 6, 신시대사, 1941.6
- 「國防保安法 解說」, 『朝光』 7-3, 조광사, 1941.3◆
- 「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解說」, 『朝光』 7-4, 1941.4
- 「三·一運動관계 被檢者에 대한 適用法令」, 『三·一運動 50周年紀念論集』, 동아일보사, 1969
- 「己未獨立運動事件과 適用法律問題(10)」, 『法曹』 18-2~11, 1969.2~11

## 다. 학위논문 지도

### (1)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5편)

- 鄭範錫, 「民主主義 立場에서 現行身分法을 批判함」, 1953
- 孫珠瓚, 「韓國 親族法 草案의 立法論的 考察」, 1955
- 金容旭, 「民法草案上 戶主 및 戶主相續制에 對한 批判」, 1957
- 金容漢, 「韓國 相續法草案의 比較法的 考察」, 1957
- 朴秉濠, 「李朝時代의 不動產物權에 關한 研究」, 1958
- 孫昌喜, 「韓國養子制度의 變遷에 關한 研究」, 大學院, 1960
- 李宅熙, 「美國外交 政策樹立過程의 政治的 動態性」, 1960

- 鄭求云, 「身分法上의 權利濫用에 關한 研究」, 1960
- 李元載, 「希臘親族法研究」, 1961
- 金相薰, 「配偶者 相續權에 關한 比較法的 研究」, 1962
- 趙英淑, 「事實婚에 關한 研究」, 1964
- 邊光順, 「韓日 家族法의 比較法的 研究: 親族法을 中心으로」, 1967
- 具然昌, 「遺留分 制度의 比較法的 研究: 立法論을 中心으로」, 1967
- 朴在允, 「事實婚保護에 關한 研究」, 1970
- 李兌榮, 「韓國 離婚制度 研究」, 1957

(2)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편; 구제박사)

- 李兌榮, 「韓國 離婚 研究」, 1969
- 朴秉濠, 「韓國近世의 土地所有에 關한 研究: 土地所有의 法과 法意識」, 1975

(3) 타고 석사학위논문(6편)

- 全 玉, 「相續法의 比較法的 研究: 韓國女性을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1957
- 趙明赫, 「近親婚禁止에 關한 比較法的 研究」, 단국대학교, 1961
- 林奈敬, 「比律賓親族法의 比較法的 考察」, 이화여자대학교, 1965
- 李仁錫, 「우리나라 離婚制度研究: 判例를 中心으로」, 건국대학교, 1965
- 金貞子, 「比律賓相續法의 比較法的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1966
- 金淑子, 「蔚籍料에 關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69

■ 참고문헌

- 김상태, 『물 수 없다면 짓지도 마라: 윤치호 일기로 보는 식민지 시기 역사』, 산처럼, 2013.  
 鈴木敬夫, 『법을 통한 조선식민지 지배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9.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법문사, 1974.  
 박지향, 『윤치호의 협력일기』, 이숲, 2010.

- 이중연, 『‘책’의 운명 : 조선-일제강점기 금서의 사회·사상사』, 혜안, 2001.
- 鄭肯植, 『韓國近代法史攷』, 박영사, 2002.
- 최종고, 『한국의 법학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편집위원회, 『서울대학교 도서관50년사: 1946~1996』,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1996.
- 한국법학교수회 편, 『법학교육과 법학연구: 고 정광현 박사 추모 논문집』, 길안사, 1995.
- 에드워드 와그너/ 이훈상·손숙경,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 2007.
- 김선주, 「조선후기 평양의 사족」, 『세계사의 관점에서 본 조선시대 지역엘리트 사족』,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15.
- 金疇洙, 「鄭光鉉 博士의 婚姻法」, 『법학교육과 법학연구』, 길안사, 1995.
- 박병호, 「鄭光鉉 先生의 學問世界」, 『가족법논집』, 진원, 1996.
- \_\_\_\_\_, 「고문서자료의 수집·정리 문제」, 『근세의 법과 법사상』, 진원, 1996.
- 박종근, 「雲樵 張之允 선생님」, 『도우회보』, 서울대학교 도우회, 1998.
- 심희기 대담, 「영산 박병호 교수의 법사학 세계」, 『법과 사회』 14, 창작과 비평사, 1997.
- 윤진수, 「한국민법학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기여」, 『서울법대 학문연구 70년』, 2016. 10. 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주최 학술대회 자료집.
- 이상정, 「성헌 황적인 선생님과 저작권법」, 추모논문집간행위원회, 『誠軒 黃迪仁 先生님의 학문과 삶의 세계』, 화산미디어, 2015.
- 이승일, 「일제의 관습조사와 전국적 관습의 확립과정 연구: 《慣習調査報告書》의 편찬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6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2009.
- 이태영, 「설송 정광현 선생님」, 『법학교육과 법학연구』, 길안사, 1995.
- 李熙鳳 평, 「韓國家族法研究」, 『서울대학교 法學』 9-2, 서울대 법학연구소, 1967.
- 임상혁, 「설송 정광현의 『성씨논고』에 나타난 법사상과 창씨개명」, 『家族法研究』 23-1, 한국가족법학회, 2009.
- 田鳳德 平, 「三·一獨立運動史: 判例를 통해서 본」, 『法史學研究』 5, 한국법사학회, 1979.
- 정공식, 「한국 근현대 법학교과과정 변천사」, 『法學論叢』 36-1,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정하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제도의 변천 그리고 우리의 역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10,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14.
- 조미경 평, 「한국의 법학 명저: 정광현 “韓國家族法研究”: 가족법학의 발전과 한국가족법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48-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坂元眞一, 「“明治民法”의 성씨제도와 “創氏改名”(朝鮮)·“改姓名”(臺灣)의 비교분석」, 『법사학연구』 22, 한국법사학회, 2000.
- 편집부, 「박병호 교수 걸어오신 길」, 『서울대학교 법학』 32-1·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
- 황민호, 「전신통제기 조선총독부의 사상범 문제에 대한 인식 통제」, 『사학연구』 79, 한국사학회, 2005.
- 황적인, 「鄭光鉉 교수의 약력과 업적」, 『아세아여성법학』 7,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04.
- 笹川紀勝, 「法治主義と抵抗の記録-植民地支配と裁判所」, 松田利彦·岡崎まゆみ 編, 『植民地裁判資料の活用: 韓國法院記録保存所所藏・日本統治期朝鮮の民事判決文資料を用いて』, 京



都: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2015.

安田幹太, 「朝鮮民事令중 改正에 관한 制令 解説」, 『京城日報』 1939년 11월 10~12일(『韓國家族法研究』, 58-63쪽 수록).

『경향신문』, 『동아일보』(NAVER 뉴스 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 “정광현” 검색

『조선일보』(조선일보 아카이브[[http://srchdb1.chosun.com/pdf/i\\_archive/](http://srchdb1.chosun.com/pdf/i_archive/)]) “정광현” 검색

『대학신문』(편찬위원회, 『서울대법대백년사 자료집(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 1989 이용)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鄭在命”, “정광현” 검색

漢陽學人, 「左傾教授·右傾教授, 延禧專門教授層評(續)」, 『삼천리』 12, 1931.2.1.

三千里 機密室, 「專門學校의 푸로렛사群像 2」, 『삼천리』 7-8, 1935.9.1.

편집부, 「밋나는 梨花女專門 文科全貌」, 『삼천리문학』 1, 1938.1.1.

(이상 최종검색일: 2016.10.7)

<Abstract>

## Professor Seolsong Jung Kwanghyun's Life and Academic World

Jung Geung Sik\*

Professor Seolsong Jung Kwanghyun(1902~1980) was teaching law at 1930-1938 at the Yonhee Professional School. He was appointed as professor of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50. In his lifetime, 10 books and 136 articles in total 146 pieces were released. He was academically sincere and strict, he was teaching students who would become scholars so. He has built the foundations of family law in Korea, his academic achievements are meaningful to us, even after his the demise 30 years passed. And his masterpiece "*Korean Law of Family Relations and Successions: A Study of its History and Interpretation*" has already become a classic. He majored family laws, furthermore specialized only law of family relations among civil laws. His goal was to democratization of family law, ultimately to build democratic families in society and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To practice it, he was aggressive in academic activities, as well as public activities. Finally, his activities were formed the basi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at 1956.

---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Jung Kwanghyun, Law of Family Relations and Successions,  
The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Korean  
Law of Family Relations and Successions*

